발 간 등 록 번 호 11-1613000-000121-01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

2013. 10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의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3년 10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 일 영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준한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참여연구진 김민우 교통안전공단 연 구 원

이 진 우 교통안전공단 연 구 원

최시양 한솔알앤디이 사

박재록 한솔알앤디대 리

제목 차례

제1장 보행교통 개선계획 업무개관1
1. 개요1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세부계획2
3. 기타 보행교통 관련 세부계획4
4.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관한 업무절차9
5. 개선계획 주요내용10
6. 개선계획 수립시 고려사항13
제2장 보행교통 개선계획 개요15
1. 개선계획의 개요
2. 지역의 특성과 현황16
제3장 보행교통 개선계획 기본방향17
1. 개선계획 기본방향17
2. 개선계획사업 추진성과 분석17
제4장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제시19
1. 상위계획 검토19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수립20
제5장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23
1. 실태조사 목적 및 주체23
2. 실태조사 시기 및 범위23
3. 실태조사 내용25
4. 보행교통특성 종합평가30

제6장 보행교통 개선대책31	
1. 지역별·분야별 문제점 및 세부 개선대책 ·······31	
2. 연차별 투자계획34	
3. 사업비 조달 방안	
4. 의견 청취 및 협의36	
5. 보행교통 개선대책 전망(종합지표 도출)37	
제7장 기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	
1. 지자체별 보행교통 우수사례 제시39	
2. 보행교통 실태조사 DB 구축 및 활용40	
[부록1] 표준 보행교통 개선계획(안)41	
[부록2] 보행교통 개선대책 세부 개선방안65	
[부록3]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81	
[부록4] 보행교통 개선계획 표준품셈121	
[부록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133	



제1장 보행교통 개선계획 업무개관

1. 개요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보행교통은 가장 기초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이 활성화될 경우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주차비용 절감, 신체건강 증진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년 6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제정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는 보행교통의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가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각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표준적인 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나. 과업의 목적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 수단인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함
- 본 과업은 상위계획상의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항목 선정,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보행교통 계선계획 수립, 지표 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 보행교통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수송분담 목표를 제시함
- 보행정책 수립 시 지자체의 보행환경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설정함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세부계획

2.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정경위

- '09.06.09 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9777호]
- '09.12.10 법률 시행
- '10.01.18 시행령[대통령령 제21997호] 제정·공포·시행
- '10.01.21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17호] 제정·공포·시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국토교통부, 2013.05

- 법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 통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 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 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 지표를 작성·공표·보급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 법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 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 4. 보행교통 개선대책
-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세부계획

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2020)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에 의해 10년 단위로 수립함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 환경 친화적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교통물류체계로 전환 전략 수립함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을 위한 시행과제 및 추진계획 수립함

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2012~2016)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에 의해 수립함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 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함

다. 보행교통 개선계획(2015~2019, 잠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의해 수립함
- 자동차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임
- 보행교통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수송분담 목표를 제시함
- 보행정책 수립 시 지자체의 보행환경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기초로 보행교통 개선지표 설정함
- 각 지자체가 보행교통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 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작성중임(2013)

3. 기타 보행교통 관련 세부계획

3.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함
-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개정 2013.3)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수립함
- ㅇ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

교통안전법 제15조

법 제15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 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 2.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 3. 교통수단 · 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 7.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8.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 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 1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 안을 종합·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 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정책목표
- 2.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 3. 투자규모
- 4.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사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개정 2013. 3) 제6조에 의해 수립함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보행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포함함
- 지자체는 별도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 법 제6조(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 3. 보행환경 실태
-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한다.
- ③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당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 ⑤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

법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야 하다.

-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 2.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4. 보행환경 실태
-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12~2016)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공동, 개정 2013. 3) 제7조에 의해 수립함
-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 전용길, 보행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포함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제7조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률 제6조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중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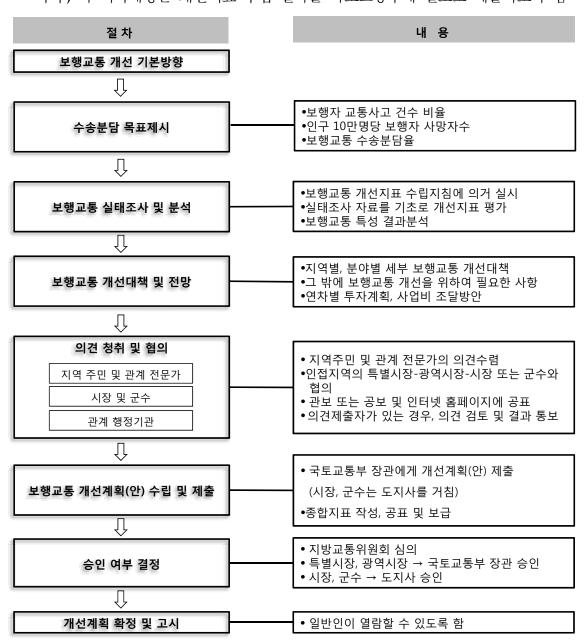
-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 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

3.4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 서울시에서 1998년 조례에 의해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자체로 확대됨
-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수립함
-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등을 포함함
- 지자체별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의 목표 및 세부추진전략을 제시함

4.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관한 업무절차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하여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등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추후, 각 지자체장은 개선지표 수립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



<그림 1-1>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관한 업무절차

5. 개선계획 주요내용

5.1 개요

- 계획의 수립 배경, 목적, 성격, 주요내용 등을 넣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자체의 위치, 면적, 인구 등 계획을 세우게 되는 지역의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5.2 보행교통 개선계획 기본방향

-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법령들에 따라 수립된 보행교 통 관련계획에 대한 추진내용 및 성과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함
-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 및 계획이외에 해당 지자체와 관련된 보행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조사된 추진성과는 목표달성여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사점 등을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함

5.3 수송분담 목표제시

- 상위 관련 계획들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하되, 해당 지자체의 현황 및 특징 등에 적합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
 - 관련 계획들의 목표가 현실성이 없거나 본 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조정
-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기간 내에 달성할 목표를 제시함
 - 목표는 사고 및 보행환경 현황, 추세 변화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지표들을 조사 및 활용가능
- 목표는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지방자 치단체의 여건, 상황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조정하거나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이 지표 외에 미래상, 기본방향, 목표, 전략도 제시함

5.4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과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지침에 따라 실시 및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문헌이나 자료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조사는 반드시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반현황조사 및 보행교통 관련 실태조사는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 및 작성함
- 실태조사는 해당 시·군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보행과 관련한 문제점 을 파악하여 해결방안 모색 등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 조사 항목 중에서 자료를 얻을 수 없거나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제외 또는 조정 가능함
- 보행교통 개선지표는「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에서 제시한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분야 및 세부항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
- *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지침(국토교통부 제2012-44호)

5.5 보행교통 개선대책

- 개선대책의 방향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대한 배경 및 목적, 현황, 문제점,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함
- 각 계획들의 투자소요비용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함
 -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 및 파악
 - 기존에 시행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등에서 소요된 금액을 통한 추정
- 투자계획은 년차별·사업별로 세우고 비용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및 제시하여 각 기관별 분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투자계획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좀 더 파악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함
- 최근 5년간 실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액수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연간 조달이 가능한 재원의 규모를 예측함
- 현실성이 있는 재원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상의 문제로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함

5.6 의견청취 및 협의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등은 개선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함
- 개선계획 수립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 인접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의견청취 및 협의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5.7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6. 개선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고, 해당 지역실정 에 적합한 보행에 관한 중·장기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
- 보행교통 개선계획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행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보행교통 실태조사'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서로 유사하나 산출 산식등 도출해내는 과정이 다름
 - 따라서, 기 수립된 보행관련계획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실태조사 중복항목은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개선지표를 산출할 수 있으며, 그 외 1년 이상은 추가로 작성하도록 함
- 지자체는 사업지별 개선방안 도출시 선행된 보행교통 관련계획 개선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

개선계획 목차(부록1: 표준 보행교통 개선계획안)

- 1. 보행교통 개선계획 개요
- 2. 보행교통 개선계획 기본방향
- 3.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제시
- 4.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5. 보행교통 개선대책
- 6. 기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



제2장 보행교통 개선계획 개요

1. 개선계획의 개요

- 계획의 수립 배경, 목적, 성격, 주요내용 등을 넣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 는 5년마다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함

1.1 개선계획 수립주체 및 수립시기

○ 수립대상 : 163개 시·군 지자체

○ 수립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 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 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함

1.2 개선계획 수립범위

가. 시간적 범위

- 5년마다 수립(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관한 법률 제38조)
 - 1차수립시기 : 2015~2019(잠정)

나. 지역적 범위

○ 광역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 기초지방자치단체 : 도 관할구역의 시·군

다. 내용적 범위

-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보행교통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제시
 -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보행교통 개선대책
 - 기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
- 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계획들 중 어느 하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수립하여 전체 보행관련 계획을 파악하도록 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도로정비기본계획
 - 지방대중교통계획

2. 지역의 특성과 현황

- 해당 지자체의 위치, 면적, 사회경제지표(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등 계획을 세 우게 되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함
- 보도연장 등 보행교통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여 제시하고 미흡 한 부분이 있을시 문제점으로 언급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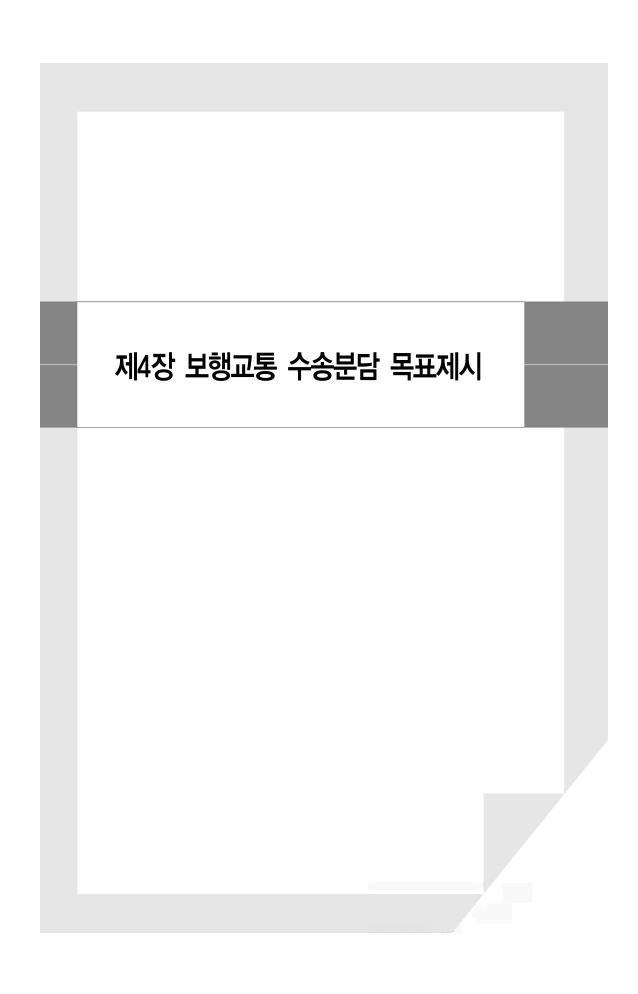
제3장 보행교통 개선계획 기본방향

1. 개선계획 기본방향

- 최근 5년간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법령들에 따라 수립된 보행교통 관련 계획에 대한 추진내용 및 성과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내용을 정리하도록 함
-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 및 계획 외에 해당 지자체와 관련된 보행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조사된 추진성과는 목표달성여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사점 등을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함
-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점, 선단위의 계획이 아닌 면단위의 지역·지구별 개선 방안으로 접근하도록 함

2. 개선계획사업 추진성과 분석

- o 추진성과는 목표 달성치, 사업별 추진실적 및 투자실적으로 나누어 살펴봄
- 전년도 설정한 목표치와 실적을 비교하여 달성여부를 검토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 및 이유를 조사하여 차년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개선계획의 수립 후에 지자체의 상황, 여건 등의 변화로 실행계획이 변경 된 것들도 기술하여 추진계획의 변경사항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타 관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도 포함시켜 작성하도록 하여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보행교통 개선계획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은 제2차 보행교통 개선계획부터 작성 하도록 함



제4장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제시

1. 상위계획 검토

1.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2011년~2020년)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하여 1km 미만 단거리 승용차 통행의 15%를 보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음
-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세부전략을 제시하였음
 - 사람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도시형 올레길 구축운영
 -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

1.2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2012년~2016년)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에서는 2016년까지 1km 미만 단 거리 승용차 통행의 10%를 보행으로 전환하는 것과 10만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1명에서 1.6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 보행 기초시설 확충
 -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확대
 - 도시형 올레길·차없는 거리 조성 운영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 보행자 보호를 위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 보행자길 불법 시설물 정비
 - 보행시설의 체계적 유지보수

1.3 2012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는 보행 사망자수를 2011년 1,998명에서 2012년 1,514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표 4-1> 2012년도 보행자 사망자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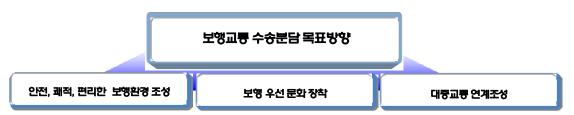
구 분	2011년 실적	2012년 계획	증 감	증감율(%)
○전체 사망자수(명)	5,229	4,497미만	-732	-14.0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2.4	2.1미만	-0.3	-12.5
○보행 사망자수(명)	1,998	1,514	-484	-24.2
○사업용자동차 사고 사망자수(명)	928	750	-178	-19.2

출처 : 2012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 대책을 제안하였음
 - 주택가 생활도로 보도 정비
 - 보행우선구역 조성
 - 보행환경 개선
 - LED 등을 이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활성화 및 지원
 -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 제고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수립

- 보행교통에 대한 관심증대 및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과 확충을 위한 수송분담, 보행안전 증진에 관한 사고감소에 대한 목표를 제시함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보행공간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우선문화 장착 등으로 방향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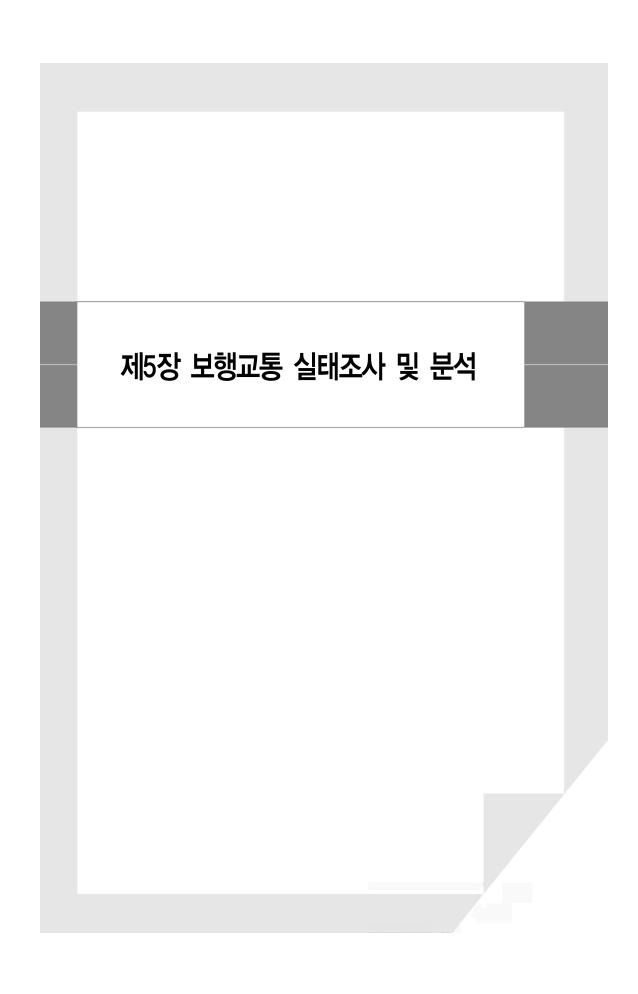
<그림 4-1>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수립

- 지자체는 KTDB*의 "전국 여객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에서 제시하는 수단분담률 또는 기 수립된 상위계획을 참고하여 목표를 수립함
- * KTDB(국가교통DB): 한국교통연구원에서 5년마다 수행하고 있는 「국가교통수요 조사 및 DB구축사업」으로, 정확한 수요예측 및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투자사업의 기초자료로 사용
-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목표는 상위 관련계획들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고려하고, 해당 지자체의 실정 및 특징 등에 적합하여 계획 수립기간 내에 달성이 가능 한 목표를 제시함
- 개선계획의 목표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방자치 단체의 여건, 상황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표를 다른 것으로 조정하거나 기본지표 외에 추가적으로 설정함
- 지역현황, 추세변화, 국내·외 사례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함
-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종합평점은 각 조사대상구간의 종합평점을 평균 내어 목 표로 제시함

<표 4-2>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위한 목표 설정

목표 항목	현재 (실적)	1 차년	2 차년	3 차년	4 차년	5 차년
전체 교통 사고건수						
보행관련 사고건수1)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비율(%)						
인구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보행교통 수송분담율(%)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종합평점						

¹⁾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중 차대사람(횡단 중, 차도통행 중, 길가장자리 통행 중, 기타)을 의미한다.



제5장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1. 실태조사 목적 및 주체

-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보행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법에서 제시한 세가지 분야^{*}에 대해 도시규모별로 표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이동성·안전성·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 는 제외)이며,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여건 변화 등에 대 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함
- 보행교통 개선지표는 보행교통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제2012-44호)에 따라 수립

2. 실태조사 시기 및 범위

2.1 시기

-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조사일자는 일주일 중 보행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선택하여 조사하며, 비, 눈 날씨 변수가 없는 날을 선정함

2.2 조사범위

- 도시규모별, 토지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점을 조사하도록 함
 - 대도시 : 인구 100만 이상 중도시 : 인구 30만 이상 ~ 100만 미만
 - 소도시 : 인구 30만 미만
- 조사대상구간은 보차분리된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보도구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왕복 2차로도 가능함
- 조사대상구간 길이는 버스정류소를 포함한 500m 내외로 함

<표 5-1> 조사대상 구간 선정 과정

구 분	내 용	비고
1 단계	조사대상 읍면동 선정	상업지역 공사자수 밀도(종사자수/km)가 가장 높은 읍면동 선정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읍면동 종사자수 활용 주거지역 인구 밀도(인/km)가 가장 높은 읍면동 선정
2 단계	용도지역 구분	• 도시계획도면 상의 용도지역 구분 - 지적, 임야, 지번도 활용
3 단계	조사대상 구간 선정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고 좌우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포함한 보도 구간 선정 소도시의 경우 정류소 주변 보행량이 많지 않을시 시청 (군청), 시장, 터미널, 철도역 등 보행량이 많은 보행유 발시설 주변 보도를 조사대상구간으로 선정함

<표 5-2> 도시규모별, 토지규모별 최소 조사지점수

구분	상업지역	주거지역
대도시(100만 이상)	15개소	15개소
중도시(30만 이상)	8개소	8개소
소도시(30만 미만)	3개소	3개소

○ 조사대상구간의 선정사유를 최종선정구간과 후보구간을 포함하여 반드시 제시 하도록 함

2.3 지표의 수립과정

<표 5-3> 개선지표 수립과정

구 분	과 제	내 용
		• 조사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a =1-11	보행교통	군수
1 단계	실태조사	• 조사내용 :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
		• 조사주기 : 5년
	보행교통	• 수립주체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2 단계	보양교·중 개선지표	• 수립내용 : 지자체의 분야별(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지역별
	기 선지표 수립	(용도지역별 또는 행정구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
	一 一 日	• 수립주기 : 5년

3. 실태조사 내용

<표 5-4> 실태조사 내용

구분	실태조사 내용	조사방법
일반 현황조사	· 목표 수립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인구, 면적 등 지역 내 일반현황자료 조사	• 문헌조사
실태조사	• 실태조사 : 선정된 대상지점을 현장실태조사(실측조사) 실시 • 이용만족도 조사 : 지역 내 보행환경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설문조사)	◦ 실측조사 ◦ 설문조사
보행통행 특성조사	○ 건축물의 입지특성 및 옥외공간 구성형태 ○특정 보행행위 ○ 목적별 보행동선 ○ 주민 보행의식	• 실측조사

3.1 일반현황 조사

가. 조사목적

○ 개선계획 목표 수립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인구, 면적 등 지역 내 일반 현황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나. 조사항목

<표 5-5> 지역 일반현황 조사항목(문헌조사)

분류	실태조사 항목	활용
사회경제지표	∘ 인구현황 ∘ 도시면적 ∘ 자동차등록현황 ∘ 도로연장 ∘ 보행 연관시설물	∘ 교차로신호주기(초) ∘ 조사대상보도의 진행방향에 위치 한 횡단보도 녹색시간(초)
보행관련지표	∘보행담당 인력 ∘보행 관련통계	· 현황파악 필요 및 반영방안 검토

다. 조사방법

- ㅇ 문헌 조사
 - 사회경제지표, 기반시설현황, 보행교통 실태조사 항목 등 일반현황 통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출되는 자료를 활용
 -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타법에 의한 자료는 해당 계획 및 보고서 자료를 활용

- * 타 공공기관 조사자료 활용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stat.mltm.go.kr/)
-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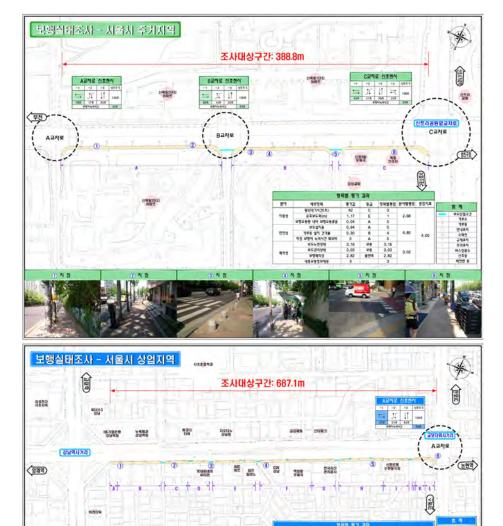
3.2 실태조사

-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제2012-44호)을 준수하며 시행함
-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을 위한 항목별 기초 데이터 수집함

<표 5-6> 보행교통 개선지표 조사 내용

분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세부조사항목	조사방법
이 동 성	횡단 대기 시간	- 교차로신호주기(초) - 조사대상보도의 진행방향에 위 치한 횡단보도 녹색시간(초)	실측조사
	유효보도 폭	- 실제보도폭(m) - 장애물에 의해 방해받는 폭(m)	실측조사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보행속도×보행밀도)	 첨두시 보행교통량(인/시) 첨두 15분 교통량(인/15분)	실측조사
안 전 성	보도설치율	- 조사대상구간 전체 길이(m) - 보행단절구간 길이(m)	실측조사
	가로등 설치 간격률	- 조사대상구간 내의 가로등 개수(개)	실측조사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 횡단보도 녹색시간(초) - 횡단보도 폭(m)	실측조사
	보도 노면상태 수준(노면패임, 보 도블록 파손, 고인 물 등)	-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보도 관리상태 수준(불법주차, 노 점상, 무단적치물, 오물 등)	-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쾌 적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소음/ 매연/휴게시설/녹지, 가로수 등)	- 만족도 설문조사 - 보행관련 민원발생 건수(정량적)	설문조사
전 성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 정류소표지판 설치여부 - 노선번호 안내 여부 - 노선별 경유정류소 안내 여부 - BIS설치 여부 - 보도상 대중교통정보안내판 설치 여부	실측조사

-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의 각 분야별로 평점을 통한 지역별 조사대상구간의 교통특성을 분석함
 - 도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종합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 보행교통 실태조사 조사내용은 현황도면에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함



<그림 5-1> 보행교통 실태조사 현황도 예시

ST ST ST

3.3 보행교통 개선지표

가. 정의

- 보행교통 개선지표는 정부의 보행정책 수립 시 지자체의 보행환경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각 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지표로서, 5년 마다 수행하는 보행실태조사를 기초로 작성되는 지표임
- 지자체는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통해 해당지역의 보행환경실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개선시키도록 함
-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3분야로 구분함
-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제2012-44호)에 근거하여 작성함

나. 항목

○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표 5-7> 보행교통 개선지표 분야별 개념 및 평가항목

분야	개념	평가항목	개선지표
۸)		- 보행신호체계	횡단대기시간
이 동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이 동을 위해 원활하게 이동	- 보도시설확보	유효보도폭
성	할 수 있는 정도	- 보행속도	보행용량 대비
0		- 보행밀도	보행교통류율
안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위	- 보행안전시설 확보	보도설치율
전	험요소로부터 생명과 신	- 가로등 조명수준	가로등 설치 간격률
성 		- 보행신호시간 확보수준	적정 보행자녹색시간확보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도 노면, 관리상태 수준
쾌 적	보행통행상의 방해를 받	-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보행쾌적성 만족도
성	지 않고 쾌적함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정도	- 노선 안내수준	대중교통 정보제공

3.4 지역별 보행교통 특성 결과 분석

- 지자체는 선정된 각 구간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며, 보행교통 개선지표 분 야별로 검토하며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의 평점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의 양식에 따라 주거·상업지역 각 조사대상구간별로 제시함
- 분야별평점 및 종합평점 산출시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
- 항목별 가중치는 [부록3]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을 참고하여 계산함
 - 분야별 가중치는 이동성(0.254), 안전성(0.579), 쾌적성(0.167)을 적용

<표 5-8> 개선지표 제출 양식(예시) - 주거지역의 조사대상구간1

분야	H 체크투 게 사기표	スパル	평점	분야별	종합
です	보행교통 개선지표	조사값	る台	평점	평점
ो	횡단 대기 시간	42	3		
동	유효보도 폭	1.17	1	2.68	
성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0.04	5		
<u></u> 안	보도설치율	0.94	5		
전	가로등 설치 간격률	0.3	4	4.85	3.99
성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5	5		
	보도 노면상태 수준	3.16	3.16		
적	보도 관리상태 수준	3.03	3.03	3.02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2.82	2.82	3.02	
_ 성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3	3		

<표 5-9> 개선지표 제출 양식(예시) - 상업지역의 조사대상구간1

분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조사값 평점	スパント	떠져	분야별	종합
でい	모앵파중 개선시표 		お祖	평점	평점	
ो	횡단 대기 시간	50	2			
동	유효보도 폭	1.6	3	3.03		
성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0.5	4		ı	
안	보도설치율	0.8	4	3.08	3.08	
전	가로등 설치 간격률	0.4	4			
성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0.9	2			
쾌	보도 노면상태 수준	3	3			
적	보도 관리상태 수준	4	4	2 10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2.5	2.5	3.19		
_ 성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3	3			

4. 보행교통 개선지표 종합평가

○ 지역별 개선지표 종합평가는 조사대상구간별로 작성된 개선지표 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지자체의 보행환경수준을 파악하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제시함 <표 5-10> 지역별 개선지표 종합평가 양식(예시)

7 H			조취.퍼기		
	구 분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 종합평점	
 주거	조사대상구간1	2.68	4.85	3.02	3.99
지역	조사대상구간2	3.90	4.85	2.85	4.27
시역	조사대상구간3	2.80	2.08	2.67	2.36
 상업	조사대상구간1	3.03	3.08	3.19	3.08
지역	:	:	:		

- 분야별 개선지표 종합평가는 조사대상구간의 개선지표 항목별 평균으로 분야별 평점을 산출 후, 이를 통해 지자체의 종합평점을 도출함
 - 항목별 평균계산, 분야별 평점 계산 및 종합평점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함

<표 5-11> 분야별 개선지표 종합평가 양식(예시)

분			평점			종합	
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평균	분야별 평점	평점	
(ه	횡단 대기 시간	3.33	3.33	3.33			
동	유효보도 폭	2.66	2.66	2.66	3.12		
성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3.66	3.66	3.66			
<u></u>	보도설치율	4.33	4.33	4.33			
전	가로등 설치 간격률	3.66	4.33	3.99	3.59	3.37	
성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3.66	2.00	2.83			
	보도 노면상태 수준	2.90	3.30	3.10			
쾌 적 성	보도 관리상태 수준	2.81	3.50	3.15	3.01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2.70	2.74	2.72	3.01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3.00	3.00	3.00			



제6장 보행교통 개선대책

1. 지역별·분야별 문제점 및 세부 개선대책

- 지자체별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행교통 개선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 후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조사대상별 교통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 조사대상구간별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시행방향 제시함
- 지역별·분야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는 문제점, 시사점 등을 분석한 후 보행교 통 개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표 6-1> 지역별・분야별 보행교통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양식

구분		중점개선지표	문제점	개선방안	
주거 지역	조사대상 구간1	이동성	대상구간 내부에 보치혼용으로 대중교통접근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보행자 시설설치 - 불법 주·정차 문제	
7 1 -1	:	:	:	:	
상업 지역	조사대상 구간1	안전성	- 대상구간 내부에 보도가 미설치되어 대중교통 접근 로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보행환 경개선요구가 많음	
7 1 -1	:	:	:	:	

-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의 조사항목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후, 제도·시설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보행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
- 항목별 세부 내용은 [부록2] 보행교통 분야별 세부개선 방안을 참고하며, 사업대상지의 상황에 맞는 별도의 지침을 사용할 경우 관련 기준을 제시함
- 지자체는 사업지별 개선방안 도출시 선행된 보행교통 관련계획 개선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

<표 6-2> 이동성 분야 개선방안 예시

구분	제도적 방안	시설적 방안		
	- 보행신호주기 조정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 신호주기 정비		
보행자	- 보행자 횡단보도 시설 정비	- 보행자 횡단시설(횡단보도, 대각선횡단보도 스테거드횡단보도, 고원식횡단보도)		
시설 설치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 안전시설(방호울타리, 자동차진입억제 용말뚝,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음향 교통신호기, 경사로 손잡이)		
	- 입체보행시설 지양	- 기존 입체보행시설 개선(수직이동시설 및 보도폭 정비, 경사로 정비)		
	- 시차별 주차규제	- 노상주차장 운영(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우선		
불법	-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제, 구역주차제, Two-match제)		
주•정차	- 도로변 주차금지	- 주차단속CCTV · 전광판 설치		
	- 대중교통 전용도로	- 주차금지표지		

<표 6-3> 안전성 분야 개선방안 예시

구분	제도적 방안	시설적 방안	
차량주행 속도 및 통행 제한	- 최고속도 제한(30km/h) - 대형차량 통행제한	- 속도저감시설(고원식교차로, 지그재그형태 도로, 차로폭 좁힘, 요청포장, 과속방지턱) - 차량통행 규제	
007111	- 일방통행 운영	- 차량진행방향 규제	
보차분리	- 보행자·차량 분리	- 연석에 의한 분리, 유색 포장에 의한 분리, 볼라드에 의한 분리	
방범 및	- 보행교통지킴이 확대		
보행로	- 보행교통개선	- CCTV설치	
조도확보	- 보행교통 지도	- 가로등 조도개선, 가로등 설치간격 조정	
<u>工工</u> 科里	- 보행관련시설 정비		

<표 6-4> 쾌적성 분야 개선방안 예시

구분	제도적 방안	시설적 방안
보행경관 조성	- 디자인 가이드라인	- 수목 등 식재 - 쓰레기 정비 - 휴게 및 녹지 공간 - 교통 표지판 시인성 증진 - 옥외 광고물 및 간판 정비 - 보도 패턴 및 컬러 정비 - 보도시설물 디자인 - 스트리트 퍼니처
보행로 및 보행공간	- 보행공간 확보	- 보행장애물 제거, 보도신설 및 보행로 연결, 보행광장 조성, 보행로 정비, 유 효보도폭원 확보, 가로등 설치등
확보	- 불법노점상규제	- 노점상 판매대 제작 및 배포, 영업가능 시간대 조정, 적치범위 규제
대중교통 연계방안	- 대중교통 전용도로	- 대중교통 알림시설 - 버스 및 택시 정류장 개선

2. 연차별 투자계획

2.1 보행교통 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분야별·지역별 세부 개선방 안'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단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시한 모든 계획들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순위가 높은 개선안부터 시행
 - 또한 보행환경이 열악하거나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
 -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정부지원 제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추진계획을 작성
 - 세부추진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 제시
- 세부추진계획은 각 기관별 계획 및 관련사업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가능한 한 명시하여 추진되고 있는 보행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함
 -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기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명시하여 각 계획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들의 역할분담 및 방향을 제시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의 작성은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를 참조하여 작성 하도록 하되, 좀 더 파악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작성함

<표 6-5>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작성 양식

사업명	사업 세부	계획 기간 및 추진기관	조사대상구간	비고
1	1-1			
1,	1-2			

2.2 투자소요비용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각 계획들의 투자소요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파악하거나 기존에 시행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등에서 소요된 금액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하여 작성하도록 함
- 가능한 한 타 관련 계획들에서 수행될 보행관련 사업들의 소요비용도 포함 시켜 보행관련 계획에 투자되는 전체적 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소요비용을 년차별·사업별로 구분하고 비용 조달방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여 분담방안을 제시함
- 투자소요비용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작성은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를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좀 더 파악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경우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음

<표 6-6> 보행교통 개선사업 연간 사업량 및 소요예산 양식

		투자비							
사업명	사업량 (개소)		1차년		•••		5차년		비고*
	(개조)	합계	국고	지자체	•••	합계	국고	지자체	
1.					•••				
					•••				
					•••				
					•••				
					•••				
					•••				
					•••				

^{*}사업 시행지역. 그 외 특이사항을 기입

3. 사업비 조달 방안

-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은 최근 5년간 실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액수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연간 조달이 가능한 재원의 규모를 예측함
 - 단, 일반회계에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조달 방안 고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함
- *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중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에 지원 가능
-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보행환경 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함
 -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7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며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방식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때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회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함
-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성을 반영한 재원의 규모를 예측함
- 사업들을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규모를 파악하고, 지원이 안되는 사업들에 대한 년차별 조달 방안을 검토함
-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함

4. 의견 청취 및 협의

- 특별시장등은 개선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함
-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 개선계획 수립 전, 특별시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광역시장은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수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함
- 특별시장등은 개선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 및 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의견청취 및 협의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5. 보행교통 개선대책(종합지표 도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작성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표 6-7> 조사개요 양식

제출기관	시, 도시(군)
	국과 (성명)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현장조사 책임자	기관명 및 소속:성명:전화:
조사일시	년월일요일 ~년월일요일

<표 6-8> 조사지점 집계표 양식

구 분	번 호	조사구간						조사일시	
	1	시, 도	시(군)	읍, 면, 동	핲	m구간	년	월	일
주거	2	시, 도	시(군)	읍, 면, 동	앞	m구간	년	월	일
지역									
소계		개 구간	mΞ	건간					
	1	시, 도	시(군)	읍, 면, 동	앞	m구간	년	월	일
상업	2	시, 도	시(군)	읍, 면, 동	핲	m구간	년	월	일
지역	•								
	•								
소계) .	개 구간	m ¬	간					

 지역별 개선지표는 조사대상구간별로 작성된 개선지표 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 리하여 지자체의 보행환경수준을 파악하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제시함

<표 6-9> 지역별 개선지표 제출 양식(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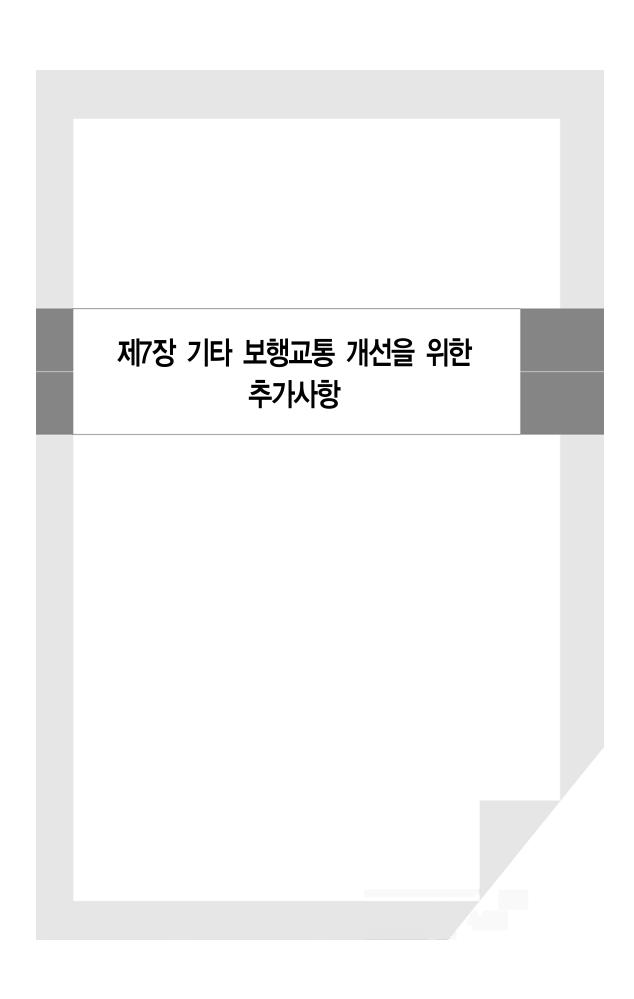
¬ н			고취되기		
	구 분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종합평점
	조사대상구간1	2.68	4.85	3.02	3.99
주거	조사대상구간2	3.90	4.85	2.85	4.27
지역	조사대상구간3	2.80	2.08	2.67	2.36
	소계 ¹⁾	3.13	3.92	2.84	3.53
상업	조사대상구간1	3.03	3.08	3.19	3.08
78 년 지역	:	:	:	:	:
시 ii	소계	3.12	3.26	3.18	3.21
	합계 ²⁾	3.12	3.59	3.01	3.37

- ※ 1) 주거·상업지역의 분야별 평점은 각 조사대상구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2) 지자체의 분야별 평점은 주거·상업지역의 분야별 평점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3) 각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분야별 개선지표는 조사대상구간별로 작성된 개선지표 결과를 개선지표 항목별로 정리하여 지자체 전체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제시함

<표 6-10> 분야별 개선지표 종합평가 양식(예시)

분		평점 ¹⁾			분야별 ²⁾	조하
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주거	상업	평균	군아일 / 평점	종합 평점
۴-		지역	지역	정신	で 治	で 位
०]	횡단 대기 시간	3.33	3.33	3.33		3.37
동	유효보도 폭	2.66	2.66	2.66	3.12	
성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3.66	3.66	3.66		
안	보도설치율	4.33	4.33	4.33	3.59	
전	가로등 설치 간격률	3.66	4.33	3.99		
성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3.66	2.00	2.83		
쾌	보도 노면상태 수준	2.90	3.30	3.10		
적	보도 관리상태 수준	2.81	3.50	3.15	3.01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2.70	2.74	2.72	3.01	
_성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3.00	3.00	3.00		

- ※ 1) 주거·상업지역의 개선지표 항목별 평점은 각 조사대상구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2) 분야별 평점과 종합평점은 지역별 개선지표 합계와 같아야 한다.
 - 3) 각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제7장 기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

1. 지자체별 보행교통 우수사례 제시

가. 목적

○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제시함 <표 7-1> 작성예시 양식

사업개요		
사업지 위치		
세부내용		
oo시 사업시행전	oo시 사업시행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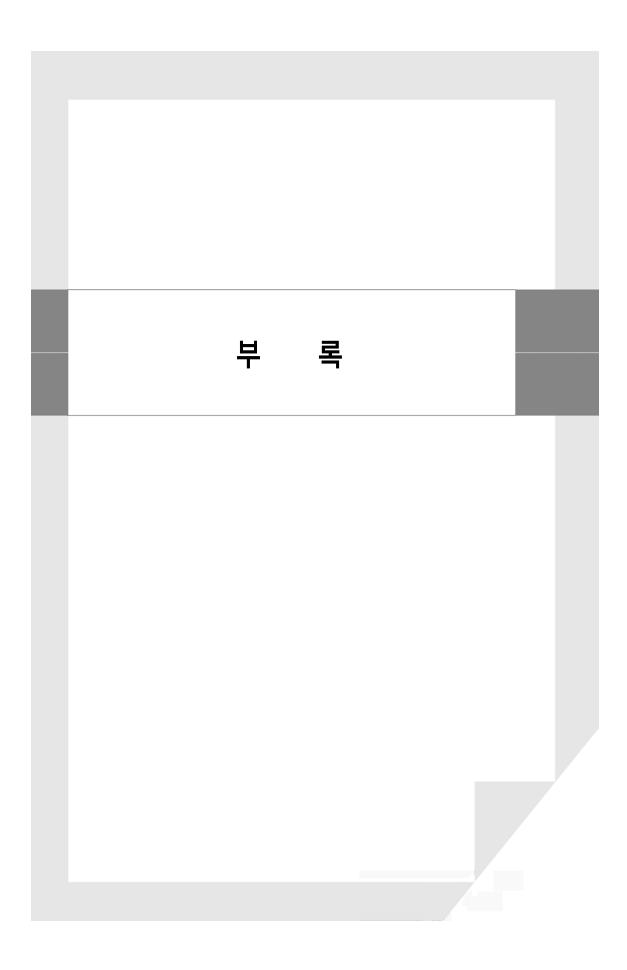
2. 보행교통 실태조사 DB 구축 및 활용

가. 목적

- 현황 보행환경 수준을 파악하고 장래 개선 정도 파악 및 개선안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보행과 관련된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정리가 필요함
- 수집되는 자료는 통일된 자료양식에 의해 정리·분석·비교 평가하도록 함

나. 필요사항

- 자료의 정리·분석·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교통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보행 교통개선업무 전반에 관한 일을 처리하여야 함
- 자료는 교통자료를 DB화하여 전달 될 수 있도록 함
- 수립된 보행교통 개선지표는 지자체에서 DB구축이 힘들 경우 타 기관에 제공하여 구축하도록 함



[부록1] 표준 보행교통 개선계획(안) 제1장 총 칙

1.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목적

○ 본 매뉴얼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계획의 성격

-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자동차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 지자체는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 및 관리해야 한다.
- 종합개선지표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보행환경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표로서, 각 지자체는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1.3 법적근거

○ 지속가능 발전 물류법에 관한 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법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 통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 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 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 지표를 작성·공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 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법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 4. 보행교통 개선대책
-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계획의 수립원칙과 포함내용

2.1 계획의 수립원칙

가. 기본원칙

- 자동차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들 사이에서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행교통 개선계획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성, 정비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은 단순히 미래상을 제시하거나 계획만을 나열하기 보다는 현실을 고려
 하여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 하 "특별시장등")는 보행교통 개선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상 호 연계되도록 하고, 해당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행에 관한 중·장기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실행된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등은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지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다.
- 일반현황조사 및 보행교통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개선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다음 관련 계획들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나, 그 내용들도 개선계획에
 포함해 수립하여 전체 보행관련 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도로법」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 대중교통계획

다. 기타원칙

- 매뉴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당해 지역실 정이나 여건 등으로 인하여 매뉴얼의 세부내용 중 일부분에 대하여 이를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 용할 수 있다.
- ㅇ 사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 명확하고 분명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획은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하며 계획의 내용은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한다.
- 특별시장등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 경찰청 등의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특별시장등이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이 매뉴얼을 과업지시서로 활용할 수 있다.

2.2 계획의 수립범위

가. 시간적 범위

○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계획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지역적 범위

○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은 제 외한다)의 단위로 수립한다.

다. 내용적 범위

○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관할 지역 내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의 보 행교통 활성화 및 이를 위해 본 과업은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및 수송분 담 목표제시,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보행교통 개선대책을 포함한다.

- ㅇ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행교통 개선계획 개요
 - 보행교통 개선계획 기본방향
 -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제시
 - · 보행에 대한 관심증대 및 대중교통 접근보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 교통 개선과 확충을 위한 수송 분담 방안 및 목표제시
 - ·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비율,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보행교통 수송분담율
 -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등에 관련 항목 실태조사와 이용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설정하고, 보행교통 개선계 획과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 보행교통 개선대책
 - 지역별, 분야별 세부 보행교통 개선대책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비 조달방안
 - 의견 청취 및 협의
 - 보행교통 개선대책 전망(종합지표 도출)
 - 기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

2.3 계획의 수립절차

가.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의 일반적 절차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상 필요한 사항들의 조사를 실시한 후 수립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 연구 기관 또는 용역기관을 활용하여 수립할 수 있다. ○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수송분담 목표제시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보행교통 개선대책
의견청취 및 협의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시장 및 군수 의견청취 및 합의
관계 행정기관 협의
보행교통 개선계획(안) 수립 및 제출
승인 여부 결정
개선계획 확정 및 고시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업무절차>

나. 개요

- 계획의 수립 배경, 목적, 성격, 주요내용 등을 넣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해당 지자체의 위치, 면적, 사회경제지표(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등 계획을 세 우게 되는 지역의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보행교통 개선계획 기본방향

-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법령들에 따라 수립된 보행교 통 관련계획에 대한 추진내용 및 성과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 한다.
-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 및 계획 외에 해당 지자체와 관련된 보행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조사된 추진성과는 목표달성여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사점 등을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한다.

라. 수송분담 목표제시

- 상위 관련 계획들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하되, 해당 지자체의 실정 및 특징 등에 적합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 관련 계획들의 목표가 현실성이 없거나 본 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조정한다.
-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기간 내에 달성할 목표를 제시하다.
 - 목표는 사고 및 보행환경 현황, 추세 변화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지표들을 조사 및 활용가능하다.
- 목표는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지방자 치단체의 여건, 상황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조정하거나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 이 지표 외에 미래상, 기본방향, 목표, 전략도 제시한다.

마.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과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지침에 따라 실시 및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문헌이나 자료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조사는 반드시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현황조사 및 보행교통 관련 실태조사는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 및 작성한다.
- 문헌조사는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자료는 가 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한다.

- 실태조사는 해당 시·군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보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 조사 항목 중에서 자료를 얻을 수 없거나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제외 또는 조정 가능하다.
- 보행교통 개선지표는「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에서 제시한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분야 및 세부항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다.
- *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지침(국토교통부 제2012-44호)

바. 보행교통 개선대책

- 개선대책의 방향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하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대한 배경 및 목적, 현황, 문제점, 추진방법 등을 제시한다.
- 각 계획들의 투자소요비용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한다.
 -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 및 파악한다.
 - 기존에 시행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등에서 소요된 금액을 통하여 추정한다.
- 투자계획은 년차별·사업별로 세우고 비용부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및 제시하여 각 기관별 분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투자계획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좀 더 파악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 최근 5년간 실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액수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연간 조달이 가능한 재원의 규모를 예측한다.
- 현실성이 있는 재원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상의 문제로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 의견 청취 및 협의

- 특별·광역시장등은 개선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개선계획 수립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한다.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 인접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의견청취 및 협의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개선지표를 종합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행교통 개선계획 확정 및 고시

- 시장 또는 군수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에게 개선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경의 요청이 없으면 제출한 개선계획안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개 선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주요내용

-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획의 개요
 - 2) 보행교통 개선계획 기본방향

- 3)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제시
 -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비율
 -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 보행교통 수송분담율
- 4)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지침에 의거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개선지표 평가
 - 보행교통 특성 결과분석
- 5) 보행교통 개선대책
 - 지역별, 분야별 세부 보행교통 개선대책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비 조달방안
 - 보행교통 개선대책 전망(종합지표 도출)
- 6) 기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
- 보행교통 개선 및 문화의식 향상 우수사례
- 해당 지자체별 보행교통 우수사례

제2장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방법 및 내용

1. 보행교통 개선계획 개요

- 계획의 수립 배경, 목적, 성격, 주요내용 등을 넣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해당 지자체의 위치, 면적, 사회경제지표(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등 계획을 세우게 되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보도연장 등 보행교통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여 제시하고 미흡
 한 부분이 있을시 문제점으로 언급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행교통 개선계획 기본방향

2.1 보행교통 개선계획 기본방향

- 최근 5년간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법령들에 따라 수립된 보행 관련 계획에 대한 추진내용 및 성과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야하며,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관련 법령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교통안전법」제18조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
 - 「도로법」제22조 "도로정비 기본계획"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 위에서 제시한 관련 법령 및 계획 외에 해당 지자체와 관련된 보행사업이 있는 경우,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관련 계획의 추진성과는 목표달성여부, 부진원인, 문제점 및 시사점 등을 도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계획에 반영한다.
-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점, 선단위의 계획이 아닌 면단위의 지역·지구별 개선 방안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2.2 보행교통 개선계획사업 추진성과 분석

- 보행교통 개선계획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은 제2차 보행교통 개선계획부터 작성하도록 한다.
- 특별·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보행교통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립한 분야별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내용 및 성과를 정리한다.
- 기존 수립된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추진내용, 목표 달성여부 및 달성율, 문제 점, 시사점 등을 분석한 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도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종합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3.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제시

- 보행교통 개선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수송분담 목표는 관련계획들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하되, 해당 지자체의 실정 및 특징 등에 적합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송분담 목표는 관련 계획들과 상호연계 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관련 계획들의 목표가 현실성이 없거나 본 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기간 내에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 목표는 사고 및 보행환경 현황, 추세 변화 등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 지자체는 KTDB의 "전국 여객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에서 제시하는 수단분담률 또는 기 수립된 상위계획을 참고하여 목표를 수립한다.
 - 목표들 중에서 1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개선계획의 목표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방자치단 체의 여건, 상황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표를 다른 것으로 조정하거나 기본지표 외에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지역현황, 추세변화, 국내·외 사례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한다.
- 설정한 목표에 대한 설정이유 또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종합평점은 각 조사대상구간의 종합평점을 평균 내어 목 표로 제시한다.

목표 항목		1 차년	2 차년	3 차년	4 차년	5 차년
전체 교통 사고건수						
보행관련 사고건수2)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비율(%)						
인구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						
 보행교통 수송분담율(%)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종합평점						

4.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보행교통 실태조사는 개선계획 수립목표 및 정책방향설정을 위한 지역 일반 현황 조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한 보행교통 현장실태조사로 구분되며,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제2012-44호)에 따라서 실시 및 작성하도록 한다.
- 실태조사는 기존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이용하며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태조사는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에 대해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 현재 보행교통 관련한 문제점 파악 및 도출, 원인 및 해결 방안 모색, 조사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 및 개선지표 수립 등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 개선계획 목표수립을 위한 문헌조사는 다음에 제시하는 모든 항목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 내용 중에서 자료를 얻을 수 없거나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다.

²⁾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중 차대사람(횡단 중, 차도통행 중, 길가장자리 통행 중, 기타)을 의미한다.

4.1 실태조사 시기 및 범위

-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실측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개선계획을 수립 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도시규모별, 토지용도별로 구분하여 지점을 조사하도록 한다.
 - 대도시 : 인구 100만 이상 중도시 : 인구 30만 이상 ~ 100만 미만
 - 소도시 : 인구 30만 미만
- 조사대상구간은 보차분리된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보도구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왕복 2차로도 가능하다.
- 조사대상구간 길이는 버스정류소를 포함한 500m 내외로 한다.

<조사대상 구간 선정 과정>

구 분	내 용	비고
1 단계	조사대상 읍면동 선정	상업지역 공사자수 밀도(종사자수/km)가 가장 높은 읍면동 선정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읍면동 종사자수 활용 주거지역 인구 밀도(인/km)가 가장 높은 읍면동 선정
2 단계	용도지역 구분	• 도시계획도면 상의 용도지역 구분 - 지적, 임야, 지번도 활용
3 단계	조사대상 구간 선정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고 좌우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포함한 보도 구간 선정 소도시의 경우 정류소 주변 보행량이 많지 않을시 시청 (군청), 시장, 터미널, 철도역 등 보행량이 많은 보행유 발시설 주변 보도를 조사대상구간으로 선정함

<도시규모별, 토지규모별 최소 조사지점수>

구분	상업지역	주거지역
대도시(100만 이상)	15개소	15개소
중도시(30만 이상)	8개소	8개소
소도시(30만 미만)	3개소	3개소

○ 조사대상구간의 선정사유를 최종선정구간과 후보구간을 포함하여 반드시 제시하도록 한다.

<지역 일반현황 조사(문헌조사)>

분류	실태조사 항목	활용
	· 인구현황 · 도시면적	• 교차로신호주기(초)
사회경제지표	· 자동차등록현황 · 도로연장	• 조사대상보도의 진행방향에 위치
	· 보행 연관시설물	한 횡단보도 녹색시간(초)
 보행관련지표	· 보행담당 인력	• 현황파악 필요 및 반영방안 검토
모생산인시표	· 보행 관련통계	이번청과학 월호 뜻 반성성인 검도

 현장실태조사는 보행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며 다음에 제시하는 모든 항목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특성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용자만족도 조사 및 보행교통 현장실태조사>

분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조사항목	조사방법
		- 교차로신호주기(초)	
	횡단 대기 시간	- 조사대상보도의 진행방향에 위	실측조사
ो		치한 횡단보도 녹색시간(초)	
동	유효보도 폭	- 실제보도폭(m)	실측조사
성	'	- 장애물에 의해 방해받는 폭(m)	르기/기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 첨두시 보행교통량(인/시)	실측조사
	(보행속도×보행밀도)	- 첨두 15분 교통량(인/15분)	
رم	 보도설치율	- 조사대상구간 전체 길이(m)	실측조사
안 `		- 보행단절구간 길이(m)	
전	가로등 설치 간격률	- 조사대상구간 내의 가로등 개수(개)	실측조사_
성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 횡단보도 녹색시간(초)	실측조사
		- 횡단보도 폭(m)	
	보도 노면상태 수준(노면패임, 보	-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도블록 파손, 고인 물 등)	,	
	보도 관리상태 수준(불법주차, 노	-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점상, 무단적치물, 오물 등)	미즈트 워티크기	
쾌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소음/	-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적	매연/휴게시설/녹지, 가로수 등)	- 보행관련 민원발생 건수(정량적)	
•		- 정류소표지판 설치여부	
성		- 노선번호 안내 여부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 노선별 경유정류소 안내 여부	실측조사
	 All 0 at 0 Q at \ All 0 F	- BIS설치 여부	리기그기
		- 보도상 대중교통정보안내판	1
		설치 여부	

4.2 보행교통 개선지표

- 보행교통 개선지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에서 제시한 보행교통 개선지표 세가지^{*} 분야 의 세부항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다.
- * 개선지표 항목: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 보행교통 개선지표는 정부의 보행정책 수립 시 지자체의 보행환경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각 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지표로서, 5년 마다 수행하는 보행실태조사를 기초로 작성되는 지표이다.
-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보행공간에서 보행자의 보행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여 보행교통개선 정책 수립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제2012-44호)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분야별 개념 및 평가항목>

- 3 3	2.2	3 3 - 3 -	2.2.2.2
분야	개념 개념	평가항목	개선지표
•]		- 보행신호체계	횡단대기시간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이	- 보도시설확보	유효보도폭
동	동을 위해 원활하게 이동 할 수 있는 정도	- 보행속도	보행용량 대비
성		- 보행밀도	보행교통류율
<u></u> 안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위	- 보행안전시설 확보	보도설치율
_ 전	험요소로부터 생명과 신	- 가로등 조명수준	가로등 설치 간격률
_ 성 	체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정도	- 보행신호시간 확보수준	적정 보행자녹색시간확보
쾌	-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도 노면, 관리상태 수준
적	보행통행상의 방해를 받 지 않고 쾌적함을 느끼	-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보행쾌적성 만족도
성	며 걸을 수 있는 정도	- 노선 안내수준	대중교통 정보제공

-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의 각항목별로 대상지의 교통특성을 분석한다.
 - 도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종합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별로 조사내용 등 현황과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4.3 지역별 보행교통 특성 결과 분석

- 지자체는 선정된 각 구간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며, 보행교통 개선지표 분 야별로 검토하며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의 평점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의 양식에 따라 주거·상업지역 각 조사대상구간별로 제시함
- 분야별평점 및 종합평점 산출시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 항목별 가중치는 [부록3]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을 참고한다.
 - 분야별 가중치는 이동성(0.254), 안전성(0.579), 쾌적성(0.167)을 적용한다. <개선지표 제출 양식(예시) -조사대상구간1 주거지역>

분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조사값	평점	분야별 평점	종합 평점
ो	횡단 대기 시간	42	3		
동	유효보도 폭	1.17	1	2.68	
성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0.04	5		
안	보도설치율	0.94	5		
전	가로등 설치 간격률	0.3	4	4.85	4.00
성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5	5		
	보도 노면상태 수준	3.16	3.16		
적	보도 관리상태 수준	3.03	3.03	3.02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2.82	2.82	3.02	
_ 성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3	3		

<개선지표 제출 양식(예시) -조사대상구간2 상업지역>

분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보행교통 개선지표 조사값	평점	분야별	종합
む。上	五名正名 川边八五		0° ±	평점	평점
ो	횡단 대기 시간	44	3		
동	유효보도 폭	3.31	5	3.90	
성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0.36	3		
안	보도설치율	0.91	5		
전	가로등 설치 간격률	0.26	4	4.85	4.28
성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5	5		_,
	보도 노면상태 수준	3.06	3.06		
적	보도 관리상태 수준	2.71	2.71	2.85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2.64	2.64	2.03	
성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3	3		

4.4 보행교통 개선지표 종합평가

○ 지역별 개선지표 종합평가는 조사대상구간별로 작성된 개선지표 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지자체의 보행환경수준을 파악하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분야별 평점 분야 종합평점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조사대상구간1 4.85 3.02 3.99 2.68 주거 조사대상구간4 3.90 4.85 2.85 4.27 지역 조사대상구간3 2.80 2.08 2.36 2.67 조사대상구간2 3.08 3.19 3.08 상업 3.03 지역

<지역별 종합 평점(예시)>

- 분야별 개선지표 종합평가는 조사대상구간의 개선지표 항목별 평균으로 분야별 평점을 산출 후, 이를 통해 지자체의 종합평점을 도출한다.
 - 항목별 평균계산, 분야별 평점 계산 및 종합평점 산출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분야별 개선지표 종합평가 양식(예시)>

 분			평점		분야별	종합
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평균	평점	평점
٥]	횡단 대기 시간	3.33	3.33	3.33		
동	유효보도 폭	2.66	2.66	2.66	3.12	
성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3.66	3.66	3.66		
<u></u> 안	보도설치율	4.33	4.33	4.33		3.37
- 전 성	가로등 설치 간격률	3.66	4.33	3.99	3.59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3.66	2.00	2.83		
	보도 노면상태 수준	2.90	3.30	3.10		
쾌 적 성	보도 관리상태 수준	2.81	3.50	3.15	3.01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2.70	2.74	2.72	3.01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3.00	3.00	3.00		

5. 보행교통 개선대책

5.1 지역별 · 분야별 문제점 및 세부 개선대책

- 지자체별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행교통 개선 단계별 전략을 수 립한 후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조사대상별 교통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대상지별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시행방향 제시한다.
- 분야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는 부진원인, 시사점 등을 분석한 후 보행교통 개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분야별 계획은 서로 독립적으로 세우지 않고 계획들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전체계획의 통합성을 제고한다.
- 사업계획은 지원예정, 재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 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련 계획들에 포함되어 있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계획들도 개선계획에 포함, 수립하여 전체 보행관련 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의 조사항목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후, 제도·시설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보행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지역별·분야별 보행교통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양식>

	구분	중점개선지표	문제점	개선방안
주거 지역	조사대상 구간1	이동성	- 대상구간 내부에 보치혼용 으로 대중교통접근로 정비 가 필요한 상황임	- 보행자 시설설치 - 불법 주·정차 문제
. ,	:	:	:	
	조사대상 구간1	안전성	- 대상구간 내부에 보도가 미설치되어 대중교통 접근 로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보행환 경개선요구가 많음
	:	:	<u>:</u>	:

-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의 조사항목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후, 제도·시설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보행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다.
- 항목별 세부 내용은 [부록2] 보행교통 분야별 세부개선 방안을 참고하며,
 사업대상지의 상황에 맞는 별도의 지침을 사용할 경우 관련 기준을 제시한다.
- 지자체는 사업지별 개선방안 도출시 선행된 보행교통 관련계획 개선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5.2 연차별 투자계획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은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분야별 세부 개선방안'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단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시한 모든 계획들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순위가 높은 개선안부터 선정한다.
 - 또한 보행환경이 열악하거나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정부지원 제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추진계획을 작성한다.
 - 세부추진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 제시한다.
- 세부추진계획은 각 기관별 계획 및 관련사업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가능한 한 명시하여 추진되고 있는 보행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기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명시하여 각 계획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들의 역할분담 및 방향을 제시한다.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의 작성은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를 참조하여 작성 하도록 하되, 좀 더 파악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작성>

사업명	사업 세부	계획 기간 및 추진기관	조사대상구간	비고
1	1-1			
1.	1-2			
•••				
•••				
•••				

- 각 계획들의 투자소요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파악하거나 기존에 시행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등에서 소요된 금액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타 관련 계획들에서 수행될 보행관련 사업들의 소요비용도 포함 시켜 보행관련 계획에 투자되는 전체적 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요비용을 년차별·사업별로 구분하고 비용 조달방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여 분담방안을 제시한다.

<보행교통 개선사업 연간 사업량 및 소요예산>

	기어라			Ĩ	투자ㅂ				
사업명	사업량 (개소)		1차년		•••		5차년		비고*
	(개조)	합계	국고	지자체	•••	합계	국고	지자체	
1.					•••				
•••					•••				
					•••				
					•••				
					•••				
					•••				
					•••				

*사업 시행지역, 그 외 특이사항을 기입

 투자소요비용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작성은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를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좀 더 파악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경우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음

5.3 사업비 조달 방안

-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은 최근 5년간 실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액수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연간 조달이 가능한 재원의 규모 를 예측한다.
-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성을 반영한 재원의 규모를 예측하도록 한다.
- 사업들을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규모를 파악하고, 지원이 안되는 사업들에 대한 년차별 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5.4 의견 청취 및 협의

- 특별시장등은 개선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및 관련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개선계획 수립 전, 특별시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광역시장은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수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등은 개선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 및 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의견청취 및 협의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5 보행교통 개선대책 전망(종합지표 도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개선지표를 작성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개요 양식>

제출기관	시, 도시(군)		
담 당 자	국과 (성명)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_	
현장조사 책임자	기관명 및 소속:성명:전화:_		
조사일시	년월일요일 ~년월일	<u></u> 요일	

<조사지점 집계표 양식>

구 분	번 호		조	사구간			조시	나 일/	\]
	1	시, 도	시(군)	읍, 면, 동	앞	m구간	년	월	일
주거	2	시, 도	시(군)	읍, 면, 동	앞	m구간	년	월	일
지역	:		•						
소계		개 구간	m 구긴	<u>}</u>					
ואו	1	시, 도	시(군)	읍, 면, 동	앞	m구간	년	월	일
상업	2	시, 도	시(군)	읍, 면, 동	앞	m구간	년	월	일
지역	:								
소계		개 구간	m 구긴	<u>}</u>					

○ 지역별 개선지표는 조사대상구간별로 작성된 개선지표 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 리하여 지자체의 보행환경수준을 파악하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지역별 개선지표 제출 양식(예시)>

H Al			고취터기		
	분 야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종합평점
	조사대상구간1	2.68	4.85	3.02	3.99
주거	조사대상구간4	3.90	4.85	2.85	4.27
지역	조사대상구간3	2.80	2.08	2.67	2.36
	소계 ¹⁾	3.13	3.92	2.84	3.53
 상업	조사대상구간2	3.03	3.08	3.19	3.08
78 년 지역	:	:	:	:	:
시역	소계	3.12	3.26	3.18	3.21
	합계 ²⁾	3.12	3.59	3.01	3.37

- ※ 1) 주거·상업지역의 분야별 평점은 각 조사대상구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2) 지자체의 분야별 평점은 주거·상업지역의 분야별 평점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3) 각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분야별 개선지표는 조사대상구간별로 작성된 개선지표 결과를 개선지표 항목별로 정리하여 지자체 전체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제시함

<분야별 개선지표 종합평가 양식(예시)>

분			평점 ¹⁾		분야별 ²⁾	 종합
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평균	군아일 / 평점	평점
०]	횡단 대기 시간	3.33	3.33	3.33		
동	유효보도 폭	2.66	2.66	2.66	3.12	
성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3.66	3.66	3.66		
안	보도설치율	4.33	4.33	4.33		
전	가로등 설치 간격률	3.66	4.33	3.99	3.59	3.37
성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3.66	2.00	2.83		0.07
쾌	보도 노면상태 수준	2.90	3.30	3.10		
적	보도 관리상태 수준	2.81	3.50	3.15	2.01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2.70	2.74	2.72	3.01	
성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3.00	3.00	3.00		

- ※ 1) 주거·상업지역의 개선지표 항목별 평점은 각 조사대상구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2) 분야별 평점과 종합평점은 지역별 개선지표 합계와 같아야 한다.
 - 3) 각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6. 기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

- ㅇ 타 지자체에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보행교통 우수사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 자료의 정리·분석·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교통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보행 교통 개선업무 전반에 관한 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자료를 DB화하여 자료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한다.

[부록2] 보행교통 개선대책 세부 개선방안

1. 분야별 세부 개선방안

1.1 이동성 분야 개선방안 예시

구분	제도적 방안	시설적 방안
	- 보행신호주기 조정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 신호주기 정비
보행자	- 보행자 횡단보도 시설 정비	- 보행자 횡단시설(횡단보도, 대각선횡단보도, 스테거드횡단보도, 고원식횡단보도)
시설 설치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 안전시설(방호울타리, 자동차진입억제 용말뚝,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음향 교통신호기, 경사로 손잡이)
	- 입체보행시설 지양	- 기존 입체보행시설 개선(수직이동시설 및 보도폭 정비, 경사로 정비)
	- 시차별 주차규제	- 노상주차장 운영(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우선
불법	-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제, 구역주차제, Two-match제)
주ㆍ정차	- 도로변 주차금지	- 주차단속CCTV · 전광판 설치
	- 대중교통 전용도로	- 주차금지표지

1.2 안전성 분야 개선방안 예시

구분	제도적 방안	시설적 방안
차량주행	- 최고속도 제한(30km/h)	- 속도저감시설(고원식교차로, 지그재그형태 도로, 차로폭 좁힘, 요청포장, 과속방지턱)
속도 및 통행 제한	- 대형차량 통행제한	- 차량통행 규제
88711	- 일방통행 운영	- 차량진행방향 규제
보차분리	- 보행자·차량 분리	- 연석에 의한 분리, 유색 포장에 의한 분리, 볼라드에 의한 분리
ніні пі	- 보행교통지킴이 확대	
방범 및 보행로 조도확보	- 보행교통개선	- CCTV설치
	- 보행교통 지도	- 가로등 조도개선, 가로등 설치간격 조정
工工中里	- 보행관련시설 정비	

1.3 쾌적성 분야 개선방안 예시

구분	제도적 방안	시설적 방안
보행경관 조성	- 디자인 가이드라인	- 수목 등 식재 - 쓰레기 정비 - 휴게 및 녹지 공간 - 교통 표지판 시인성 증진 - 옥외 광고물 및 간판 정비 - 보도 패턴 및 컬러 정비 - 보도시설물 디자인 - 스트리트 퍼니처
보행로 및 보행공간 확보	- 보행공간 확보 - 불법노점상규제	- 보행장애물 제거, 보도신설 및 보행로 연결, 보행광장 조성, 보행로 정비, 유 효보도폭원 확보, 가로등 설치등 - 노점상 판매대 제작 및 배포, 영업가능 시간대 조정, 적치범위 규제
대중교통 연계방안	- 대중교통 전용도로	- 대중교통 알림시설 - 버스 및 택시 정류장 개선

2. 통행속도 및 차량통행 제한

2.1 최고속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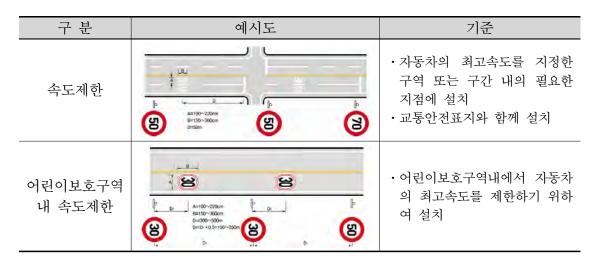
- 최고속도제한은 '도로교통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나 구간을 의미함
-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나 구간에 설치를 검토함
- 최고속도제한시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에 의한 교통안전표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관리 매 뉴얼'에 의한 속도저감 시설 등을 병행 설치토록 검토토록 함

2.2 속도 저감 시설

○ 일정구간의 속도제한 및 통행제한, 일방통행 운영 검토 시에는 속도저감시설 및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물이 복합적으로 검토토록 함

구 분	예시도	설치방법
고원식 (高原式) 교차로	June 1	 교차로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 전체를 고원화 함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우선 설치 교차로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 또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
노상 주차 지 불허		·운전자의 빈번한 방향조작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도로를 계획함 ·도로에 일정간격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
재 그 형 태 오 의 주차 도 로		 뚝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가 지그 재그 형태의 선형을 유지하도록 설치 ・단, 차량통행부의 선형을 조정하는 경우 비상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도로의 좌우에 교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시케인(Chicane)의 효과를 기대하는 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통학로가 아닌 보・차분리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할 경우에 적용함
차로폭 좁 힘	◆ 大型性質性 學 於如 使中子交換 解放 ◆ 大型性 學 於如 使中子交換 解放 ◆ 化型 學 例 以 不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차도의 폭을 물리적·시각적으로 좁히게 함 •교통섬, 보도의 확장 등 물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이용하여 도로가 시각적으로 좁아지게 함
요철포장		 노면 포장을 작은 요철형태로 포장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속도저감을 유도하는 시설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피함
과 속 방지턱	하면서 45° \	•도로 구간의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일정지역에서 통행 자동차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공간이나 학교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자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자료: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2012.11



자료: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연구용역, 국토해양부, 2008.11 <과속방지턱 적용 사례>

2.3 대형차량 통행제한

- 통행제한은 특정 교통수단의 통행으로 인해 사고위험 또는 소통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특정 장소나 구간에 대해 특정 교통수단의 통행을 제한 것을 의미함
- 대형차량 또는 특정 교통수단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이나 구간에 설치를 검토함
- 대형차량 또는 특정 교통수단 제한시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 한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토록 함

2.4 일방통행운영

- 일방통행은 교통류의 상충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위해 일정 구역이나 구간에 일정 방향으로만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격자형 도로체계를 가진 곳의 좁은 보차분리도로에서 보행안전이 필요로 하 는 구역이나 구간에 설치를 검토함
- 일방통행운영 검토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최소차로 폭 및 보도 폭 이상 설치하여 하며,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및 '교 통노면표시 설치 · 관리 매뉴얼'에 의한 교통안전표지 등을 병행함





진입거리 표지판을 통해 일방통행화 함 국내 일방통행도로 노면 표시

<일방통행 실시 사례>

3. 보행자 시설 설치

3.1 보행 신호주기 조정

- 보행자의 보행량 및 횡단보도의 위치(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구역) 등에 따라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기 설치를 검토함
- 보행자 신호주기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보행자의 보행속 도 및 횡단거리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보행자 녹색시간 = t + L/V1

t = 초기진입시간(4~7초) L = 보행자 횡단거리(m)

V1 = 보행자 보행속도

(일반인 1.0m/s, 보행약자(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0.8m/s)

3.2 보행자 도로 조성

-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고 보행자 공 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차량진입이 금지되므로 교통사고나 노 상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보행자 공간이 확대되어 지구내 안정 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제28조에 의거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 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함
-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시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최소 보도 폭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시·종점부에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병행 설치토록 함



영국 에딘버러 중심 상업거리



일본 오사카 토요센 커뮤니티존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택가

자료: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연구용역, 국토해양부, 2008.11 <보행자 도로 조성사례>

3.3 보행자 횡단보도 시설 정비

-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함
- 횡단보도 설치시에는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및 '교통노면표시 설 치·관리 매뉴얼'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병행 설치함

<횡단보도 시설>

구 분	예시도	설치방법
횡단보도	D ₁ D ₂ D ₃ D ₄ D ₅ D ₆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 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 에 설치 4m 미만의 도로에는 좌우 통행방 향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 가능
대각선 횡단보도	D ₁ =4m 01 & l ₁ =45~50cm l ₂ =1.5l ₁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설치하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의 설치 위치는 보행자의 동선,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량, 신호주기, 교차로간 거리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름
스테거드 횡단보도		·차로 중앙부에 안전섬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도로를 두 번 나누어 횡 단하게 하는 횡단보도임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 및 노약자 통행이 잦은 어린이·노약자 보호 구역내에 횡단보도 설치시 우선적 으로 고려
고원식 횡단보도	(단위:cm) 경계석 100 100 88 88 88 980 981	· 횡단보도를 볼록사다리꼴 과속방지 턱 형태로 설치 ·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 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자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3.4 보행자 안전 시설

○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검토토록 함 <보행자 안전시설>

구 분	예시도	설치방법
방호 울타리	of the surface of the	 ·자동차의 보도 진입 방지, 횡단보도가 아 닌 곳에서의 횡단 방지, 횡단보도 근처의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운전자의 시거가 불량한 구간, 차도와 인 접하여 학교 출·입구가 위치하는 경우는 보도를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
자동차 진 입 억제용 말 뚝		·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히기 위해 설치하는 말뚝 · 말뚝은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
턱낮추기	25 28 3 28 3 28 3 28 3 28 3 28 3 28 3 28	·장애인 등,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 안전지대 등에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
연 석	7/87/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
경사로	용단보도 명석경사로 圖:배수구	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
점자블록	2000日 2000日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 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 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하며, 위치 감 지용 점형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음
음향교통 신호기	-	·음향교통신호기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음향신호로 횡단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경사로 손잡이	0.55m 0.69 0.55m 0.61m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경사로 양측 에 손잡이를 설치

자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2012.11

3.5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 교통수단, 600m이내 주요 시설물, 1.2km이내
 의 여객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중교통 정보(버스 대기시간 등)
 를 알려주는 보도상에 설치한 안내시설을 말함
- 보행자안내표지판 또는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보권 500~600 미터 이내 정보뿐만 아니라 인접 도보권의 주요 랜드마크를 활용하여 현재의 위치, 교통수단, 목적지의 위치, 방향, 대기시간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일본 요코하마의 안내표지판



영국 런던의 안내표지판



국내 버스운행안내시설

자료: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연구용역, 국토해양부, 2008.11 <교통안내시설 설치 사례>

3.6 보행자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보행자 작동 신호기'라고도 하며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에 녹색신호 변경버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외에 횡단 가능 시간을 보행자에게 시청각으로 알려주는 '보행등 잔여시간 표시기 및 음향 신호기'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일반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함



국내의 교통신호기 사례





미국의 교통신호기 사례

자료: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연구용역, 국토해양부, 2008.11 <교통안내시설 설치 사례>

4. 보행로 및 보행공간 확보

4.1 보행자·차량 분리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 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보도를 설치함
-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병행 설치토록 함

<보행자·차량 분리>

구 분	예시도	설치방법
연석에 의 한 분 리	2.0m 3.5m 2.5m 2.0m 2.0m 2.5m 2.0m 2.0m 2.0m 2.5m 2.0m 2.0m 2.0m 2.0m 2.0m 2.0m 2.0m 2.0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연석을 설치하여 운 전자의 시선유도나 차도를 벗어난 자 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함
유색 포장에 의 한 분 리	2.0m 4.0m 2.0m 보도 자선 보도	·보도를 유색아스콘 등으로 포장 차도 의 높이로 동일하게 시공 ·보행자와 차량은 차선으로 구분함
볼라드에 의 한 분 리	3.0m 3.0m 2.0m	보도를 유색 아스콘 등으로 포장 차도의 높이로 동일하게 시공보행자와 차량은 볼라드 체인으로 연 결설치

자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2012.11



자료: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연구용역, 국토해양부, 2008.11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사례>

4.2 입체보행시설 지양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간선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으며 보행자가 특히 많은 경우 간선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에는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차량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체보행시설(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은 보행자보다 차량의 통행에 우 선순위를 주는 시설로 가급적 신설을 지양함
- 기존 설치되어 운영중인 입체보행시설에는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경사로 및 수직이동수단 (엘레베이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입체보행시설 설치로 인한 보도 축소 구간에는 최소 보도 폭을 확보하여야 함

구 분 예시도 설치방법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 한 수직이동시설(승강기) 설 수직이동 치 시설 및 ·시설물(계단, 승강기 등) 설 승강기 보도폭 치로 인한 보도 폭원 축소 정 비 구간은 최소보도폭워 이상 島京芸 확보 경사로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 한 경사로 설치 정 비 ★ 기 1.5m 이상 1.5m 이상

<기존 입체보행시설 정비>

4.3 불법노점상규제

1.5m 이상

9m 이내

ㅇ 무질서한 노점상 및 적치물은 보행자 통행의 불편을 가중시키며 차량의 통행 에도 방해되므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우선도로 조성과 함께 노점상 및 적치 물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함

9m 01LH

- 보행자 전용도로 및 우선도로 조성 대상가로 중 현재 노점상 및 적치물이 많 은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추후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함
- 노점상 판매대의 형태를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영업
 가능 시간대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안 검토함
- 보도상의 적치범위(점유가능 구간의 노면표시)를 규제하거나, 보도점용 불가 지역을 선정하여 이를 지도·단속하는 운영안 검토토록 함

4.4 보행로 및 보행공간 확보 시설

○ 보행 장애물 최소화 및 기존 보도 정비를 통해 보행로 및 보행공간을 추가 확보 및 정비하는 방안 검토되어야 함

<보행공간 확보 방안>

구 분	개선 방안
보행 장애물 제거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공중전화박스 등 기타 보행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이전 설치 등을 통해 보행 장애물 제거 ·교통신호기 및 교통표지판 설치시 지주를 지탱하는 지주부착대 를 노면에 매설 또는 통합형태로 계획하여 유효보도폭울 확보
보도 신설 및 보행로 연결	·보도 단절 구간에 일방통행 운영 및 차로폭 축소, 노상주차 제 거 등을 통해 보도를 신설하여 보행의 연속성 확보
보행광장	 ·관공서의 유휴부지 및 담장 철거로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에 식재 및 벤치 등을 설치하여 보행 중 쉴 수 있고 시민 만남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사이 가각이 필요 이상으로 큰 교차 로는 보도 메우기를 시행하여 가로수나 벤치, 기타 상징 조형 물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휴식공간을 제공
보행로 정비	·노면이 파손되거나 함몰되어 실제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한 구역을 조사하여 정비 ·보행로 하부 공동구 관련 공사시 통합 공사를 통해 보행자의 불편 최소화 유도
유효보도폭 확보	·버스 및 택시베이, 입체보행시설로 인한 보도 축소 구간에 대해 최소 보행통로 폭 확보

5. 불법 주·정차 및 단속

5.1 시차별 주차규제

- 학교 및 상가 밀집 지역과 같은 특정 시간대 보행자 집중 시설 인근 가로에 대해 보행자 집중시간대 주·정차 규제 강화함
- 보행자 비첨두 시간대 주·정차 규제 완화하여 조업 및 기타 차량 주·정차 로 인한 보행자 불편 최소화 검토되어야 함
- 도로 상 노면표시를 통해 특정시간대 조업 및 업무활동 가능토록 표기하며, 교통안전표지를 통해 주·정차 금지 시간대 홍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 해 불법 주·정차 예방함

5.2 불법 주ㆍ정차 단속

-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 대해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불법 주· 정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검토토록 함
- 보행자 집중 시간대 및 구간을 검토하여 집중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을 선 정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를 통해 불법 주·정차 예방함
- 대중교통 전용도로 및 버스베이, 택시베이 상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시행함
-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이유를 검토·분석하여 불법 주·정차 이유 제거 방안 검토 필요함

5.3 도로변 주차금지

○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해 도로변 주차금지 구간 을 설정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주차 예방해야 함

5.4 불법 주・정차 방지 방안

○ 주차단속 CCTV 및 주・정차 금지 안내 전광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의 규제 설치 및 주차장 안내 표지판, 거주자/업무 우선주차제 도입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주차장 안내 및 노상 주차 설치 방안 검토함

<노상주차장 운영제도>

구 분	개 선 내 용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거지 주민에게 해당 주거지 인접 주차구획선에 대하여 일정 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동안 사용 승인하는 제도		
	·인근 사업장의 상근자에게 해당 근무지 인접 주차구획선에 대		
업무우선주차제	하여 일정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시간동안 사용 승인하는 제 도		
구역주차제	· 우선 주차신청자에 대하여 인접 주차구획선을 구역(Block) 단위 로 사용 승인하여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Two-match제	·주차면을 지정받지 못한 주거지 주민 및 사업장 상근자가 주차 요금 공동부담을 조건으로 사용 승인자와 협의 및 동의를 구한 후 사용승인 기간 및 시간범위 내에서 지정주차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도		

6. 방범시설 설치(CCTV)

-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란 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내에 설치한 범죄예방·재난 안전·주정차 단속 등 옥내·외 CCTV를 한 장소에서 모니터 및 관리할 수 있 도록 관제·관리·기능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경찰관과 자치단체 담당자, 모 니터요원이 협업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뜻 함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4년까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CCTV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관제센터의 유형별 구축 현황>

구 분	코 게 O 처	개소수	CCTV	모니터 요원	비고
	관제유형		대수	(경찰/지자체)	(기타목적)
계	-	465개소	48,446	202/551	3,661대
통합관제	방범용, 불법주		14,119	100/350	불법주정차 1,511대,
	정차, 재난감시	0077)] &			재난 520대, 교통정보
	등 CCTV 통합	27개소			176대, 쓰레기투기 469
	관제				대, 시설감시 985대
합도관제	지자체와 합동 관제	28개소	10,037	78/201	(방범용 또는 교통)
개별관제	경찰 단독 관제	9개소	1,813	24/0	(방범용)
	기본 근무와 병행	401개소	22,477	-	(방범용)

자료 : CCTV 관제시스템 통합이 경찰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경찰청, 2011.12.31

7. 보행교통 지킴이 확대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 보행교통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활동 확대함
- 보행교통에 관한 지도 활동 확대토록 함
- 보행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건의 활동 지원토록 함 <보행교통 지킴이 활동>

구 분	활동내용
보행교통개선	· 안전한 횡단방법, 우측보행, 무단횡단 방지, 교통신호준수, 보행 안전취약지점, 시간대에 대한 안전 보행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보행교통 지도	·스쿨존, 어린이놀이터, 생활도로, 생활권도로, 보행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에서 보행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불법주차, 과속주행, 보행자 주의의무 위반등에 대한 신고 및 지도
보행교통관련시설	 보행신호체계, 보도시설, 보행교통안내시설 모니터링 및 개선안 건의 보행안전시설, 조명시설, 방범등, 방범용 CCTV, 동절기 결빙 구간, 잠재적 사고발생 지점에 대한 개선 건의 보행시설 유지보수 및 장애물 정비, 정류장 및 대중교통정보 제공, 휴식공간에 대한 개선 건의

자료: 보행교통 지킴이 운영지침

8. 보행교통 기초자료 DB구축

- 현황 보행환경 수준을 파악하고 장래 개선 정도 파악 및 개선안의 실효성 검 토를 위해 보행과 관련된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정리가 필요함
- 통일된 자료양식에 의해 수집되는 자료는 정리·분석·비교 평가가 용이하며, 매년 현황파악과 향후 정책개발과 장래 목표치 예측을 가능하게 함
- 자료의 정리·분석·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교통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보행 교 통개선업무 전반에 관한 일을 처리하여야 함

9. 보행경관 조성

- 수목, 식재, 휴게, 녹지공간 으로 인한 보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하도록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작성함
- 보도 상 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보관함 설치시 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비 및 설치 가이드라인 작성함
- 교통표지판 시인성 및 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비 및 설치 가이드 라 인 작성함
- 옥외 광고물 및 간판 정비 가이드라인 작성함
- 옥외 광고보도 패턴 및 컬러 정비, 보도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함
- ㅇ 스트리퍼 퍼니처 정비토록 함

10. 대중교통 연계방안

-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환승주차장과 대중교통시설, 지하철역사와 버 스정류장, 버스정류장과 버스정류장 간 환승통로 설치가 필요함
- 환승 이용자 조사를 통해 환승통로 필요 구간에는 환승을 위한 전용도로 설 치 검토토록 함
- 환승 정류장간 정보 공유를 위해 상호 연계되는 대중교통 알림시설이 필요하 며, 현장 조사를 통해 대중교통 알림시설 개선 검토함
- 운영중인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의 베이 설치 유무 및 미설치 지점 설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함
- 운영중인 버스 및 택시 베이의 효율성 조사 후 실제 이용이 가능토록 재 검 토하여 개선 방안 제시토록 함

[부록3]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보행교통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가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보행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5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2. "보행교통 개선지표"(이하 '개선지표'라 한다)란 지자체장이 제1호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수립하는 지표로서, 분야별·지역별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교통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 3.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란 지자체장이 제2호의 개선지표를 기초로 5년마다「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4. "종합지표"란 지자체장이 수립한 분야별·지역별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 및 전국의 보행교통 개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하는 지표를 말한다.
- 5. "이동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보행통행 목적을 위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6. "안전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차량, 범죄 등 위험요소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으며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7. "쾌적성"이란 보행자가 보행공간에서 보행통행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쾌적함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2장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제3조(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 개선지표 항목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등 총 3 개 분야 10개 항목의 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의 조정) 제3조에 따른 개선지표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상 조사대상구간에 신호교차로가 없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 1. 이동성 분야의 횡단 대기 시간
 - 2. 안전성 분야의 적정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제3장 보행교통 실태조사

- 제5조(보행교통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조사대상구간) ① 실태조사의 구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도로구간으로 한다.
 - 1. 대상 도로 : 보차분리(步車分離)된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보도구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왕복 2차로도 가능함
 - 2. 대상 구간: 조사 대상 구간은 버스정류소를 포함한 구간으로 하며, 도보권을 고려하여 500m 내외로 함
 - ② 실태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조사대상 구간을 선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과정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조사구간수) 조사구간은 당해 지자체의 특정 구·동·읍·면에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4 이상의 구간을 조사해야 한다.
- 제8조(조사일자) ① 조사일자는 일주일 중 보행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선택하여 조사하며, 비나 눈 등 날씨 변수가 최대한 없는 날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첨두시(尖頭時) 조사가 필요한 항목의 경우 사전조사를 통해 첨두시를 파악하도록 한다.
- 제9조(사전 기초조사) ① 지자체장은 현장조사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구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1:1,000 수치지형도가 없을 경우에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사전 기초조사에서는 개선지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사항목 중 수치지형도상에서 측정 가능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값을 측정하고 이를 수치지형도에 표시하여 현장조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현장조사) ①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1. 실측조사 : 보도폭, 단절구간 길이, 신호시간, 횡단보도폭, 보행교통량 등 현장실측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실측한다.
 - 2. 설문조사 : 쾌적성 분야의 만족도 수준 조사를 위해 조사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를 준용한다.
- 제11조(조사양식) 현장조사는 제9조에 따른 사전 기초조사 자료가 적힌 1:1,000 수 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항목별로 별지 1의 조사양식을 참 조하여 조사한다.

제4장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 제12조(보행교통 개선지표의 평가) ① 각 지자체는 개선지표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지표를 분야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평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평점기준 중 이동성 분야의 "횡단 대기 시간"항목과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항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 대상 구간에 신호교차로가 없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 제13조(보행교통 개선지표의 분야별 항목별 가중치)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보행교 통 개선지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한 분야별 가중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2 조제3항과 같이 "횡단 대기 시간"과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항목이 평가 항목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표7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 제16조(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수립 등) ① 지자체의 개선지표는 별표 5에 따른 각 평가지표의 평점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의 평점기준 산정 예시 는 별지 4를 참조한다.
 - ② 분야별 평점은 제1항의 개선지표별 평점에 별표 6 또는 별표 7의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개선지표를 산출한 지자체장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각 지자체장은 개선지표 수립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할 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통보 양식은 별지 2와 같다.

- 제17조(종합지표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각 지자체장으로부터 개선지표 수립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지표는 제16조제2항의 분야별 평점에 별표 6의 분야별 가중치를 곱한 후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③ 제2항의 종합지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1. 전국 시·군별
 - 2. 도시 규모별

가. 대도시 : 인구 100만 이상

나. 중도시 : 인구 30만 이상 ~ 100만 미만

다. 소도시 : 인구 30만 미만

- ④ 종합지표 작성양식은 별지 3과 같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교통 개선 종합지표를 수립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활용

- 제18조(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시 활용) ① 지자체장은 개선계획 수립 시 개선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제7조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개선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개선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③ 개선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기 등을 준용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19조(우수사레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지표 공표 시 개선지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 및 우수사례를 공표할 수 있다.
- 제20조(조사 및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지표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자체장은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 및 개선지표 수립 적용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 실태조사 및 개선 지표 수립은 이 지침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연도의 익년도부터 시작되도록 적용한다.

[별표 1] 분야별 보행교통 개선지표

분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횡단 대기 시간
이 동 성	유효보도 폭
, ,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보행속도×보행밀도)
	보도설치율
안 전 성	가로등 설치 간격률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보도 노면상태 수준(노면패임, 보도블럭 파손, 고인물 등)
쾌 적 성	보도 관리상태 수준(불법주차, 노점상, 무단적치물, 오물 등)
세 ~ 6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소음/매연/휴게시설/녹지, 가로수 등)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별표 2] 보행교통 개선지표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분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조사항목	조사방법
0]	횡단 대기 시간	- 교차로신호주기(초) - 조사대상보도의 진행방향에 위치한 횡단보도 녹색시간(초)	실측조사
동 성	유효보도 폭	- 실제보도폭(m) - 장애물에 의해 방해받는폭(m)	실측조사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보행속도×보행밀도)	- 첨두시 보행교통량(인/시) - 첨두 15분 교통량(인/15분)	실측조사
안	보도설치율	- 대상구간 전체 길이(m) - 보행단절구간 길이(m)	실측조사
전	가로등 설치 간격률	- 대상구간 내의 가로등개수(개)	실측조사
성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 횡단보도 녹색시간(초) - 횡단보도 폭(m)	실측조사
	보도 노면상태 수준(노면패임, 보도블록 파손, 고인물 등)	-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보도 관리상태 수준(불법주차, 노점상, 무단적치물, 오물 등)	-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쾌적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소음/매연/휴게시설/녹 지, 가로수 등)	-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성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 정류소표지판 설치여부 - 노선번호 안내 여부 - 노선별 경유정류소 안내 여부 - BIS설치 여부 - 보도상 대중교통정보안내판 설치 여부	실측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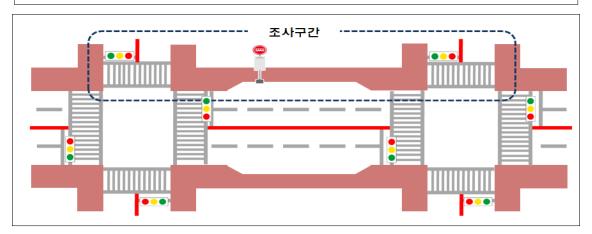
[별표 3] 용도지역별 조사대상구간 선정 과정

<주거지역>

- 대상 동/읍/면 선정 : 관할 행정구역 중 인구 밀도(인/㎡)가 높은 동/읍/면을 우선적으로 선정
- 대상 구간 선정 : 선정된 동/읍/면의 주거지역 중 버스 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정류소를 선정한 후, 정류소가 위치한 보도 구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좌우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포함함

<상업지역>

- 대상 동/읍/면 선정 : 관할 행정구역 중 종사자수 밀도(종사자수/㎡)가 높은 동/읍/면을 우선적으로 선정
- 대상 구간 선정 : 선정된 동/읍/면의 상업지역 중, 버스 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정류소를 선정한 후, 정류소가 위치한 보도 구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좌우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포함함
 - ※ 단,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 단위의 경우 버스 정차대수가 적어 정류소 주변보도에 보행량이 많지 않아 정류소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군청), 시장, 터미널, 철도역 등 보행량이 많은 보행유발시설 주변 보도를 대상구간으로 선정할 수 있음
 - ※ 선정된 정류소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있는 경우에는 가로변 보도 중 첨두시 보행량이 많은 쪽 보도 구간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그림 1-64> 보행교통 개선지표 조사구간의 선정

[별표 4] 도시규모별 최소 조사지점수

구 분	상업지역	주거지역
대도시(인구 100만 이상)	15개소	15개소
중도시 (인구 30만 이상 100만미만)	8개소	8개소
소도시(인구 30만 미만)	3개소	3개소

[별표 5] 분야별 보행교통 개선지표 평점기준

<이동성 분야>

① 횡단대기 시간

구 분	세 부 사 항								
지표성격	Negative								
	○횡단대기 시간(초) : 신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평균 지체를 의미함								
	○횡단대기 시	간(d _p) = -	$\frac{(C-g)^2}{2C}$						
	C = 신호	주기(초)							
	g = 보항	자의 유효	녹색시간(초)					
	○횡단대기 시	간이 짧을	수록 이동	성이 좋은	것으로 평	가			
평가 산식 및						2	_		
평가 방법			평가대	대상 보도			_		
	A교차.	로				B교차로			
	○평가대상 보도의 횡단대기 시간 =								
	(①번 횡단보도의 대기시간+②번 횡단보도의대기시간)								
	○교차로 신호주기의 보행자 배려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0	횡단대기 -	시간의 평	점기준				
	등 급	А	В	С	D	Е	F		
평점 기준	횡단대기시간	<15	≦30	≦45	≦60	≦90	>90		
	평 점	5	4	3	2	1	0		
		자료)	도로용량	편람, 2001	, 건설교통	·부			
	○상업지역 : 싱	업지역을 🖁	둘러싸고 있	 는 외곽 7	<u>'</u> 선도로 또	는 보조간석	 <u></u> 도로 중		
크기 비에	日	H스정차대·	수가 가장	많은 도로	일의 보도	구간			
조사 범위	ㅇ주거지역 : 주	거지역을	둘러싸고 있	(는 외곽 건	<u> </u> 선도로 또	는 보조간심	<u> </u> 도로 중		
	H] 스정차대 ·	수가 가장	많은 도로	일의 보도	구간			
	○현장에서 평기	나대상 보도	근구간과 접]한 교차로	길의 신호주	·기 및			
조사 방법	보행자녹색시	간 측정							

② 유효보도 폭

구 분	세 부 사 항								
지표성격	Positive								
평가 산식 및 평가 방법	\circ 유효보도 폭 (W_{I}) $W_{T}=$ 실제 $W_{O}=$ 시설 $^{\circ}$ 하나,	유효보도 폭이 넓을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 유효보도 폭 $(W_E) = W_T - W_O$ $W_T =$ 실제 보도폭 $W_O =$ 시설에 의해 방해를 받는 보도의 폭(실측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노상시설에 의한 장애폭'을 적용할 수 있음)							
평점 기준	○ 유효보도폭 평점 등 급 유효보도폭 평 점	기준 A ≥2.0 5	B ≥1.75 4	C ≥1.5	D ≥1.25	E ≥1.0	F <1.0		
조사 범위	○상업지역: 상업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주거지역: 주거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조사 방법	○현장에서 평가다 실측 조사	상 보도-	구간의 전	체 폭원괴	- 시설에	의한 방해	폭원을		

③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구 분	세 부 사 항									
지표성격	Negative									
지요'8'4 평가 산식 및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 ○보행교통류율(V_P) = V_P = 보행교통류율 V₁₅ = 첨두 15분간의 W_E = 유효보도폭(n ○보행용량(C) = 106(인)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V/C비) =								
평가 방법	LOS A B C D E	<	보행교통류율(인/분/m) V/C비 ≤20 ≤0.19 ≤32 ≤0.30 ≤46 ≤0.43 ≤70 ≤0.66 ≤106 ≤1.00							
평점 기준	○보행용량 대비 보행고 LOS A V/C비 ≤0.19 평점 5	7. 통류율(V/C) B ≤0.30 4	비) 평점 C ≤0.43 3	기준 ≤0.66 2	E ≤1.00	F >1.00				
조사 범위	ㅇ주거지역 : 주거지역을	내수가 가장 [많은 도로 (는 외곽	의 보도 구 간선도로 5	¹ 간 또는 보조간					
조사 방법	○ 현장에서 평가대상 5 (그중 첨두시 15분의]				

<안전성 분야>

① 보도설치율

구 분	세 부 사 항								
지표성격			Р	ositive					
평가 산식 및 평가 방법	○보도 연장(m ○보도 단절구〉	○보도설치율 = 보도 연장(m) ○보도 연장(m) = 조사대상구간 도로연장(m) - 보도단절구간 연장(m) ○보도 단절구간 : 이면도로 진출입구, 건축물의 차량진출입구 등 차량에 의해 단절되는 보도 구간 ○보도설치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							
평점 기준	○보도설치율 평 등 급 보도설치율 평 점	령점 기준 A ≥0.9 5	B ≥0.8 4	C ≥0.7 3	D ≥0.6 2	E ≥0.5	F <0.5 0		
조사 범위	○상업지역: 상업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주거지역: 주거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조사 방법	○현장에서 평 측정	가대상 보	도구간의 축	총 도로연정	} 및 보도	연장(단절-	구간 제외)		

② 가로등 설치 간격률

구 분	세 부 사 항									
지표성격	Negative									
평가 산식 및 평가 방법	 ○가로등 설치 간격률 = 실제 가로등 설치간격(m) 최대 가로등 설치간격(m) ○가로등 설치 간격률이 낮을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 ○ 적정가로등 설치간격: 수원시 등 24개 지자체의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검토 결과 가로등 설치간격은 도로폭, 교통량, 조도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어도 100m당 1개의 설치간격은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대 가로등 설치간격을 100m로 함 									
평점 기준	○ 가로등 설치 간격율 평점 기준 등 급 A B C D E F 가로등설치 간격율 ≤0.25 ≤0.45 ≤0.65 ≤0.85 ≤1.00 >1.00 평 점 5 4 3 2 1 0									
조사 범위	○상업지역: 상업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주거지역: 주거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조사 방법	○현장에서 평가대상 보도구간의 가로등 설치간격을 실측 조사									

③ 적정 보행자 녹색시간 확보비

구 분	세 부 사 항								
지표성격	Positive								
	○적정 보행자 녹색 ○적정 보행자 녹색		0 1	1 0		1 1 1 6	로 평가		
			평가대성			(2)	_		
	A교차로					B교차로			
평가 산식 및							_		
평가 방법	○평가대상 보도의	$\frac{RT}{OT} = -\frac{1}{2}$	(①번 횡단	보도의 <u>/</u>	$\frac{RT}{2T} + ②번$	횡단보도	크의 $\frac{RT}{OT}$)		
	○적정 보행자 녹색시간의 확보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								
	\circ 적정 보행자 녹색시간 = $t+rac{L}{V}$								
	· - 여기서 $t=$ 초기진입시간(7초)								
	L = 보행자 횡단거리 (m)								
	$V = \frac{1}{2}$	횡단보행속	도(1m/s)						
	ㅇ적정 보행자 녹색	신호시간	확보비(<u>R</u>	<u>(T</u>) 평점	기준				
평점 기준	등 급	А	В	С	D	Е	F		
경엽 기단	$\frac{RT}{OT}$	≥1.00	≥0.96	≥0.92	≥0.88	≥0.84	<0.84		
	평 점	5	4	3	2	1	0		
	○상업지역 : 상업기	기역을 둘러	싸고 있는	: 외곽 간	선도로 또	는 보조간	선도로 중		
조사 범위	버스	정차대수기	가장 많	은 도로의	의 보도 구	간			
- 1 u	○주거지역 : 주거기	–					난선도로 중		
	어른 보고	정차대수기 사 비디구					<u></u> 가 민		
조사 방법	○ 현장에서 정기대 횡단거리 측정	0 4-4-1	L-1 日刊	. ~ O L II-J	L-1 I 3	1 7 7/1	고 ㅈ		

<쾌적성 분야>

① 보도 노면상태

구 분	세 부 사 항									
지표성격	Positive									
터키 시시	○보도이용자를 대	상으로 보도	· 노면상태(.	포장과 관련]한 물리적	관리상태:				
평가 산식 및	식 노면 패임, 보도블럭 파손, 고인물 등)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정성적 평기	-)								
평가 방법	○보도 노면상태 민	<u> </u>	을 수록 좋은	은 것으로 평	형가					
	○보도 노면상태 수	·준 평점 기	[준							
평점 기준	보도 관리상태	매우	⊓L⊼	HE	ᆸᇚᇉᄌ	매우				
оп ле	수준 만족도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평 점	5	4	3	2	1				
	○상업지역 : 상업기	기역을 둘러?	싸고 있는 외	1곽 간선도로	로 또는 보조	간선도로 중				
조사 범위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立小 吊刊	○주거지역 : 주거기	기역을 둘러?	싸고 있는 외	l곽 간선도5	로 또는 보조	간선도로 중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조사 방법	○보도이용자를 대	상으로 보도	노면상태야	네 대한 5점	척도의 설	문조사				
그가 경엽	실시(최소 샘플 =	수 30)								

② 보도 관리상태

구 분	세 부 사 항									
지표성격	Positive									
머기 시시	0]	보도이용자를 대^	상으로 보도	. 관리상태(불법주차, 조	치물, 위험·	물, 노점상,			
평가 산식	_	오물, 청소상태 등	등 운영측면	의 관리상태)에 대한 민	<u> </u> 주도를 5점	척도로			
및 평기 바비	7	평가(정성적 평가	•)							
평가 방법	0]	보도 관리상태 민	족도가 높음	을 수록 좋은	그 것으로 평	가				
	0]	보도 관리상태 수	준 평점 기	준						
평점 기준		보도 관리상태	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ОПУТЕ		수준 만족도	만족	근국	1 o	a 근 즉	불만족			
		평 점	5	4	3	2	1			
	0 /	상업지역 : 상업지]역을 둘러%	사고 있는 외	곽 간선도로	또는 보조	간선도로 중			
조사 범위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소사 심기	0 2	주거지역 : 주거지]역을 둘러서	사고 있는 외	곽 간선도로	또는 보조	간선도로 중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조사 방법	0]	보도이용자를 대~	상으로 보도	. 관리상태어	Ⅱ 대한 5점	척도의 설든	-			
그가 경험	4	실시(최소 샘플 -	ት 30)							

③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구 분		세 부 사 항									
지표성격				Positive	2						
평가 산식	0]	보행공간의 소음	음/매연/휴거]시설 설치/	녹지, 가로~	수 설치/경된	<u></u> 등에 관한				
및	Ę	<u></u> 오조를 5점 초	북도의 설문	조사를 통해	정성적 평기	가 수행					
평가 방법	0 5	만족도가 높을수	-록 보행환/	경의 쾌적성(이 좋은 것으	으로 평가					
	0]	보행환경의 쾌적	ị성 만족도	수준 평점	기준						
평점 기준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 점	5	4	3	2	1				
	0 /	상업지역 : 상업	지역을 둘러	싸고 있는 의	리곽 간선도:	로 또는 보조	스간선도로 중				
조사 범위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771 611	02	○주거지역 : 주거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조사 방법	0]	보도이용자를 디	H상으로 보	행시 대화 기	l능 정도에	대해 5점 초	 도의				
소가 병합	۲	설문조사 수행(최소 샘플 수	= 30)							

④ 대중교통정보제공

구 분		세 부 사 항							
지표성격		Positive							
평가 산식	ㅇ보	행공간의	대중교통 정보	안내판 설치	이 여부 및 1	버스정류소의	의		
및	버.	스정보안	내 수준에 따라	평가					
평가 방법	ㅇ정.	보제공수	준이 양호할수	록 좋게 평기	}				
	ㅇ대-	중교통정	보제공 평점기	Ē					
평점 기준	젇	성보제공 내용	보도에 대중교통정보 안내판 설치	BIS설치	노선별 경유정류 소 안내	노선번호 안내	정류소 표지판설치		
		평 점	1	1	1	1	1		
○상업지역: 상업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주거지역: 주거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버스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도로의 보도 구간									
조사 방법			구간에 대중교통 난내수준 현장 ≥		설치 여부	및 버스정	류소의		

[별표 6] 보행교통 개선지표 가중치

분야	분야 가중치	보행교통 개선지표	지표별 가중치			
• <u> </u>		횡단 대기 시간	0.256			
동	0.254	유효보도 폭	0.451			
성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보행속도×보행밀도)				
 안		보도설치율	0.395			
전	0.579	0.579 가로등 설치 간격률				
성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0.458			
-n)		보도 노면상태 수준	0.315			
쾌 적	0.167	보도 관리상태 수준	0.308			
즉 성	0.107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0.218			
0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0.159			

[별표 7] 조정된 보행교통 개선지표 가중치

분야	분야 가중치	보행교통 개선지표	지표별 가중치
0]		유효보도 폭	0.606
동 성	0.254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보행속도×보행밀도)	0.394
<u></u> 안	0.550	보도설치율	0.729
전 성	0.579	가로등 설치 간격률	0.271
		보도 노면상태 수준	0.315
쾌 적	0.17	보도 관리상태 수준	0.308
식 성	0.167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0.218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0.159

[별지 1] 보행교통 실태조사 양식

보행교통 실태조사 조사표

관리	조사장소	조사장소코드						
사항								

조 사 일	년	월	일	
조 사 자	소속	성명 :		(1)
검토자	소속	성명 :		(1)

주관기관: O O O O

조사기관: 0000000

1. 횡단대기시간 조사양식

횡단대기시간 조사표

조사장소	 _시(군)	_읍/면/동	앞(지역)
조사원명	조사일시	월	일

교차로명1)	신호주기(초)	횡단보도 녹색시간(초)2)

- 주 1) 교차로명은 수치지형도에 표기한 교차로명을 기입함
 - 2) 횡단보도 녹색시간은 조사대상 보도와 동일 직선상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녹색시간을 측정함

2. 유효보도폭 조사양식

유효보도폭 조사표

조사장소	 	시(군)	 出	r/면/동		_앞(지역)
조사원명		조사일/	시	월	일	
구 간 명1)	,	실제보도폭(n	n)	장애물에	의해 방해병	발는 폭(m)

주 1) 구간명은 수치지형도에 표기한 번호를 기입함

3. 보행량 조사양식

보 행 량 조 사 표

조사장소	시시	(군)	읍/면/동	앞(지역)
조사원명		조사일시	월	일

		비보행자						
조사시간	보 행 자	오토비	1}0]	자전거	리어카	기타		
:00 ~ :05								
:05 ~ :10								
:10 ~ :15								
:15 ~ :20								
:20 ~ :25								
:25 ~ :30								
:30 ~ :35								
:35 ~ :40								
:40 ~ :45								
:45 ~ :50								
:50 ~ :55								
:55 ~ :00								

주 : 첨두 1시간 보행교통량을 측정

4. 보도설치율 및 가로등 간격률 조사양식 보도설치율 및 가로등 간격률 조사표

조사장소		시	(군)	_읍/면/동_		앞(지역)
조사원명			조사일시		월	일
	Z	소사 디	H상 구간 총 연장((m)		
	보행 단절구	'간 김	<u></u>]이(m)		ح (ح	· 도 레스o
단절구간 번	호1)		단절구간 연장(r	m)	/ / F 도	년등 개수2)

- 주 1) 단절구간 번호는 수치지형도에 표기한 번호를 기입함
 - 2) 가로등 간격률은 조사대상 구간 총연장 대비 가로등 개수로 산정한다.

5.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조사양식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조사표

조사장소	<i>X</i>	이(군)	읍/면/동	앞(지역)
조사원명		조사일시	월	일
횡단보도 번호	1) 횡구	단보도 녹색시간(초	:) 횡단보도	도 폭(m)

주 1) 횡단보도 번호는 수치지형도에 표기한 번호를 기입함 횡단보도는 조사대상 보도와 동일 직선상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조사함

6. 보도노면상태, 보도관리상태,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 설문조사 양식

보행개선 지표 수립을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	사료를 수집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서 조사에 협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00년 00월					
주관기관:	조사대행:					
☞ 조사 및 내용 문의 :						

■ 면접원이 기재하는 문항입니다.

면접원 성명			조사장	소	로		≟	차로
면접일시	2011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분 동안
검증 일시 및 확인	2011년	월	일 _	_요일 (_	시 _	분)	검증 결과	폐기 / 통과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 또는 적정한 답변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7

Ⅰ. 귀하는?

문1. 성 별 1) 남자 2) 여자

문2. 연 령 1) 10~19세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문3. 직 업 1) 학생 2) 전업주부/무직 3) 전문직/기술직

4) 행정/사무/관리직 5) 판매직 6) 서비스직

7) 농업/어업/수산업 8) 생산/운수/일반노무자 9) 기타

문4. 보행목적 1) 출퇴근

4) 쇼핑

1) 출퇴근2) 등하교3) 업무5) 운동/산책6) 여행7) 배웅/마중

7) 배웅/마중

8) 기타

Ⅱ. 보행환경

문1.	귀하가 방금 걸어	오신 보도의 만족	도를 평가해주세.	<u>Q</u>	
가.	보도 노면상태 수	-준(노면패임, 보도	.블럭파손, 고인물	등)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나.	보도 관리상태 수	·준(불법주차, 무딘	-적치물, 위험물,	노점상, 오물, 🤊	청소상태 등)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귀하가 방금 걸어 평가해주세요.	오신 구간의 보행	환경의 쾌적성 치	- 원에서 각 항목	구별 만족도를
	소음 정도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매연 정도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휴게시설 설치 정 매우 만족]도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라.	녹지, 가로수 설치	시 정도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마.	경관, 디자인, 문화	화적 조형물 설치	정도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별지 2]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결과 통보 양식

1. 조사개요

제출기관	시, 도시(군)
담 당 자	국과 (성명)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현장조사 책임자	기관명 및 소속:성명:전화:
조사일시	년월일요일 ~년월일요일

2. 조사지점 집계표

구 분	번 호		조사구간						
	1	시, 도	시(군)	읍, 면, 동	쥿	m구간	년	월	<u>일</u>
주거	2	시, 도	시(군)	읍, 면, 동	<u>까</u> 이	m구간	년	월	일
지역									
소계 개 구간 m 구간		간							
	1	시, 도	시(군)	읍, 면, 동	하	m구간	년	월	일
상업	2	시, 도	시(군)	읍, 면, 동	<u>까</u> 이	m구간	년	월	일
지역									
소계		개 구간 m 구간							

3. 개선지표 제출양식

분	1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조시	사값		평점		분야별
야 	보행교통 개선지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평균 1)	평점2)
	횡단 대기 시간						
이 동	유효보도 폭						
성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보행속도×보행밀도)						
	보도설치율						
안 전 성	가로등 설치 간격률						
J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보도 노면상태 수준(노면패임, 보도블록 파손, 고인물 등)						
쾌 적 성	보도 관리상태 수준(불법주차, 노점상, 무단적치물, 오물 등)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소음/매연/휴게시설/ 녹지, 가로수 등)						
	대중교통 정보제공 수준						

^{※ 1)}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별 최종 평점은 각 지자체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평점의 평균으로 한다.

²⁾분야별 평점은 1)의 지표별 평점에 [별표 6] 또는 [별표 7]에서 제시한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지 3] 종합지표 작성양식

1. 전국 시·군별 종합 평점 집계 양식

	173		분야별 평점		
7	가중치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종합평점1)
入]·균 \	0.254	0.579	0.167	
서旨					
부성	<u></u>				
대=	구시				
인	천시				
	주시				
대?	전시				
울선	<u></u>				
	수원시				
	성남시				
경기도	부천시				
る/15	•				
	평 균				
	춘천시				
	원주시				
강원도	강릉시				
₹2.	•				
	평 균				
	청주시				
	충주시				
충청	제천시				
북도	•				
	•				
	평 균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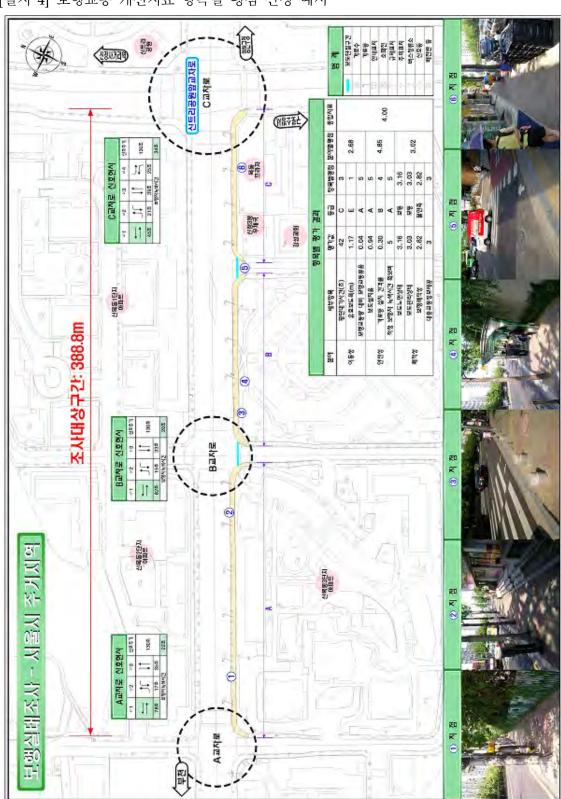
^{※ 1)}종합평점은 분야별 평점에 [별표 6]의 분야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도시규모별 종합 평점 집계 양식

	가중치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종합평점1)
도	시 규모	0.254	0.579	0.167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도시	광주시				
네도시	대전시				
	울산시				
	수원시				
	창원시				
	평 균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중도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				
	평 균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소도시	오산시				
	군포시				
	•				
	· ·				
	평 균				

^{※ 1)}종합평점은 분야별 평점에 [별표 6]의 분야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대도시: 100만 이상, 중도시: 30만 이상~100만 미만, 소도시: 30만 미만



[별지 4]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별 평점 산정 예시

1. 횡단대기시간(이동성분야)

- 횡단대기시간 산정식

횡단대기 시간
$$(d_p) = \frac{(C-g)^2}{2C}$$

단, $C = 신호주기(초)$
 $q = 보행자의 유효녹색시간(초)$

- 조사구간의 교차로 신호주기 및 보행자 녹색시간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신호주기(C)	보행자녹색시간(g)	횡단대기 시간 (d_p)
A교차로	130초	22초	45초
B교차로	130초	20초	47초
C교차로	130초	34초	35초
평 균			42초

- A교차로의 횡단대기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d_p = \frac{(C-g)^2}{2C} = \frac{(130-22)^2}{2\times130} = 45\tilde{\Xi}$$

- 마찬가지 방법으로 B교차로와 C교차로의 횡단대기시간을 계산함

B교차로 :
$$d_p = \frac{(C-g)^2}{2C} = \frac{(130-20)^2}{2\times 130} = 47$$
초

C교차로 :
$$d_p = \frac{(C-g)^2}{2C} = \frac{(130-34)^2}{2\times130} = 35$$
초

- 횡단대기시간 평가는 조사구간에 포함된 모든 신호교차로의 횡단대기시간 평균값이므로 조사구간의 횡단대기시간 평가값은 42초이며, 아래 평점기 준표에 의해 등급은 "C", 평점은 3점으로 산정됨

등 그	A	В	С	D	Е	F
횡단대기 시간	<15	≦30	<i>≦</i> 45	≦60	≦90	>90
평 점	5	4	3	2	1	0

2. 유효보도폭(이동성분야)

- 유효보도폭 산정식

유효보도 폭 $(W_E) = W_T - W_O$

단, W_T = 실제 보도폭

 W_{O} = 시설에 의해 방해를 받는 보도의 폭(실측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노상시설에 의한 장애폭'을 적용할 수 있음)

- 보도구간 단절 및 실제 보도폭 혹은 방해를 받는 보도폭의 차이에 따라 구간을 분할하여 구간 길이에 대한 보도폭을 가중평균하여 유효보도폭을 산정함

$$W_E = \frac{\sum_{i}^{n} (W_T - W_O)_i \times l_i}{\sum_{i}^{n} l_i}$$

단, l = 구간연장, i = 구간 개수

- 본 조사구간은 총 3개의 보도구간으로 분할하였음

구분	보도폭	장애물폭	유효폭	연장
A	2.5	1.3	1.2	167.4
В	2.5	1.3	1.2	103.5
C	2.4	1.3	1.1	92.9

- 따라서 조사구간의 유효보도폭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W_{E} = \frac{(2.5-1.3)\times167.4 + (2.5-1.3)\times103.5 + (2.5-1.3)\times92.2}{167.4 + 103.5 + 92.9} = 1.17$$

- 본 조사구간은 유효보도폭은 1.17m이며, 아래 평점기준표에 의해 등급은 "E", 평점은 1점으로 산정됨

등 급	A	В	С	D	Е	F
유효보도폭	≥2.0	≥1.75	≥1.5	≥1.25	≥1.0	<1.0
평 점	5	4	3	2	1	0

3. 보행용량대비 보행교통류율(이동성분야)

-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산정식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V/Cl)=rac{$$
보행교통류율 $}{$ 보행용량 $(LOSE)$ 군 $)$ 여기서, 보행교통류율 $(V_P)=rac{V_{15}}{15 imes W_E}(0/분/m)$ $V_{15}=$ 첨두 15 분간의 보행교통량 $(0/15$ 분 $)$ $W_E=$ 유효보도폭 (m) LOS E 기준 보행용량 $(C)=106(0/분/m)$

- 도로용량편람(2001, 건설교통부)의 보행자 서비스 수준은 다음 표와 같음

LOS	보행교통류율(인/분/m)	V/С¤]
A	≤20	≤0.19
В	≤32	≤0.30
С	≤46	≤0.43
D	≤70	≤0.66
E	≤106	≤1.00
F	-	

- 조사구간의 첨두 15분간 보행교통량은 67인이며, 유효보도폭은 1.17m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됨

보행교통유율(
$$V_P$$
) = $\frac{67}{15 \times 1.17}$ = 3.8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V/C비) = $\frac{3.8}{106}$ = 0.04

- 따라서 본 조사구간의 보행용량 대비 보행교통류율 값은 0.04로 아래 평점기준표에 의해 등급은 "A", 평점은 5점으로 산정됨

LOS	A	В	С	D	Е	F
V/Сы)	≤0.19	≤0.30	≤0.43	≤0.66	≤1.00	>1.00
평 점	5	4	3	2	1	0

4. 보도설치율(안전성분야)

- 보도설치율 산정식

보도설치율 =
$$\frac{$$
보도 연장 (m) }도로 연장 (m)

단, 보도 연장(m) = 조사대상구간 도로연장(m) - 보도단절구간 연장(m) 보도 단절구간 = 이면도로 진출입구, 건축물의 차량진출입구 등 차 량에 의해 단절되는 보도 구간

- 조사구간의 도로연장은 388.8m이며, 단절구간의 전체연장은 25.0m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보도설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보도설치율 =
$$\frac{388.8 - 25.0}{388.8}$$
 = 0.94

- 조사구간의 보도 설치율은 0.94이며, 아래 평점기준표에 의해 등급은 "A", 평점은 5점으로 산정됨

등 그	A	В	С	D	Е	F
보도설치율	≥0.9	≥0.8	≥0.7	≥0.6	≥0.5	< 0.5
평 점	5	4	3	2	1	0

5. 가로등 설치간격률(안전성분야)

- 가로등 설치간격률 산정식

가로등 설치간격률 =
$$\frac{4}{2}$$
 실제 가로등 설치간격 (m) 최대 가로등 설치간격 (m)

여기서, 최대 가로등 설치간격: 수원시 등 24개 지자체의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검토 결과 가로등 설치간격은 도로폭, 교통량, 조도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어도 100m당 1개의 설치 간격은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대 가로등설치간격을 100m로 함

- 조사구간내의 가로등은 총 13개로 평균 29.9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음

평균 가로등 설치간격 =
$$\frac{388.8}{13}$$
 = 29.9m

- 따라서 본 조사구간의 가로등 설치간격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가로등 설치간격률 =
$$\frac{$$
실제 가로등 설치간격 (m) } $=\frac{29.9}{100}$ = 0.30

- 조사구간의 가로등 설치간격률은 0.30이며, 아래 평점기준표에 의해 등급 은 "B", 평점은 4점으로 산정됨

등 급	A	В	С	D	E	F
 가로등설치 간격율	≤0.25	≤0.45	≤0.65	≤0.85	≤1.00	>1.00
- 평 점	5	4	3	2	1	0

6.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안전성분야)

-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산정식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frac{RT}{OT}$$
) = $\frac{$ 측정 보행자 녹색시간 적정 보행자 녹색시간

여기서, 적정 보행자 녹색시간 =
$$t$$
 + $\frac{L}{V}$

t = 초기진입시간(7초)

L = 보행자횡단거리(m)

V = 횡단보행속도(1m/s)

- 조사구간의 보행자횡단거리, 측정 보행자 녹색시간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보행자횡단거리(m)	측정 보행자	적정 보행자	적정 보행자
		녹색시간(초)	녹색시간(초)	녹색시간확보비
A교차로	11.6	22.0	18.6	1.18
B교차로	10.5	20.0	17.5	1.14
C교차로	21.5	34.0	28.5	1.19

- A교차로의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A교차로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frac{RT}{OT}) = \frac{$$
측정 보행자 녹색시간 적정 보행자 녹색시간
$$= \frac{22}{7 + \frac{11.6}{1}} = \frac{22}{18.6} = 1.18$$

- B교차로와 C교차로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함

B교차로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frac{RT}{OT}) = \frac{20}{7 + \frac{10.5}{1}} = \frac{20}{17.5} = 1.14$$

C교차로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
$$(\frac{RT}{OT}) = \frac{34}{7 + \frac{21.5}{1}} = \frac{34}{28.5} = 1.19$$

- A교차로의 경우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가 1.18이며, 아래 평점기준 표에 의해 등급은 "A", 평점은 5점으로 산정됨

등 급	A	В	С	D	E	F
$\frac{RT}{OT}$	≥1.00	≥0.96	≥0.92	≥0.88	≥0.84	< 0.84
 평 점	5	4	3	2	1	0

- 위와 같이 산정하면 조사대상 교차로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적정보행자 녹색시간 확보비	등기	평점
A교차로	1.18	A	5
B교차로	1.14	A	5
C교차로	1.19	A	5
평가값(평균)			5

- 조사대상 구간의 적정 보행자녹색시간 확보비의 평가값은 세 개 교차로의 평점 평균값인 5이며, 아래 등급기준표에 의해 등급은 "A"이고, 평점은 5 점으로 평가값을 그대로 사용함

드 그	A	В	С	D	E	F
평가값 (평점)	≥5	≥4	≥3	≥2	≥1	≥0

7. 보도 노면상태 수준(쾌적성분야)

- 보도이용자를 대상으로 보도 노면상태(포장과 관련한 물리적측면의 관리 상태, 노면패임, 보도블럭 파손, 고인물 등)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정성적 평가)
- 조사구간의 설문에 대하여 총 32명이 응답하였으며, 보도 노면상태 만족 도 평가값은 평균 3.16점으로 나타남
- 아래의 평점기준표에 의해 조사구간의 보도 노면상태 수준은 "보통"수준 으로 평가되었으며 평점은 3.16점으로 평가값을 그대로 사용함

평가값	≥5	\geq 4	≥3	≥2	<2
보도 관리상태	매우 만족	만족	нЕ	불만족	매우불만족
수준 만족도	메구 단축	단속	보통	출반숙	비구절단국

8. 보도 관리상태 수준(쾌적성분야)

- 보도이용자를 대상으로 보도 관리상태(불법주차, 노점상, 무단적치물, 오물 등 보도 운영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정성적 평가)
- 조사구간의 설문에 대하여 총 32명이 응답하였으며, 보도 관리상태 만족 도 평가값은 평균 3.03점으로 나타남
- 아래의 평점기준표에 의해 조사구간의 보도 노면상태 수준은 "보통"수준 으로 평가되었으며 평점은 3.03점으로 평가값을 그대로 사용함

평가값	≥5	\geq 4	≥3	≥2	<2
보도 관리상태	메이 마조	만족	нΕ	불만족	매우불만족
수준 만족도	매우 만족	친숙	보통	돌반숙	메구물만국

9.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쾌적성분야)

- 소음 정도, 매연 정도, 휴게시설 설치 정도, 녹지·가로수 설치 정도, 경관·디자 인·문화적 조형물 설치 정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

- 상기 5개 항목이 쾌적성 평가에 미치는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1위~5위) 조사 ※ 전체 응답자(355명)의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 산정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음

- 소 음 정 도 : 3.515

- 매 연 정 도 : 3.555

- 휴게시설 설치 정도 : 2.859

- 녹지·가로수 설치 정도 : 2.882

- 경관·디자인·문화적 조형물 설치 정도 : 2.189

- 5개 항목별 만족도 점수에, 중요도 조사에서 산출된 항목별 가중치를 적 용하여 가중평균한 점수를 최종 평점으로 산출

※ 보행 쾌적성 만족도 평점 산정 예

항 목	만족도(A)	가중치(B)	A × B	쾌적성평점(D/C)
소 음	2.53	3.515	8.899	
매 연	2.59	3.555	9.221	
휴게시설 설치	2.72	2.859	7.773	
녹지·가로수 설치	3.41	2.882	9.816	2.82
경관·디자인· 문화적 조형물 설치	3.03	2.189	6.635	
합 계		15.000(C)	42.343(D)	

- 조사구간의 설문에 대하여 총 32명이 응답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평 균 보도쾌적성 만족도 평가값은 2.82점으로 나타남
- 아래의 평점기준표에 의해 서울시 주거지역의 보행환경의 쾌적성 만족도는 "불만족"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평점은 2.82점으로 평가값을 그대로 사용함

평가값	≥5	≥4	≥3	≥2	<2
보도 쾌적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메기 전략	난국	T-8	는 건국	테그 출신덕

10. 대중교통 정보제공(쾌적성분야)

- 보행공간의 대중교통 정보안내판 설치 여부 및 버스정류소의 버스정보안 내 수준에 따라 평가함
- 조사구간에는 정류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노선번호 안내 및 노 선별 경유정류소 안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아래 평점기준표에 의해 조사구간의 대중교통 정보제공 평점은 3 점으로 산정됨

- 정보제공 내용	보도에 대중교통 정보안내판 설치	BIS설치	노선별경유 정류소안내	노선번호 안내	정류소 표지판설치
평 점	1	1	1	1	1

[부록4] 보행교통 개선계획 표준품셈

출처: 교통관련계획 표준품셈, 한국교통기술사협회, 2012.9

1. 정의 및 업무범위

가. 정의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법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에 의거, 자동 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으로 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계획으로서,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의 이동편의성 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 립하는 계획이다.

나. 자료제공의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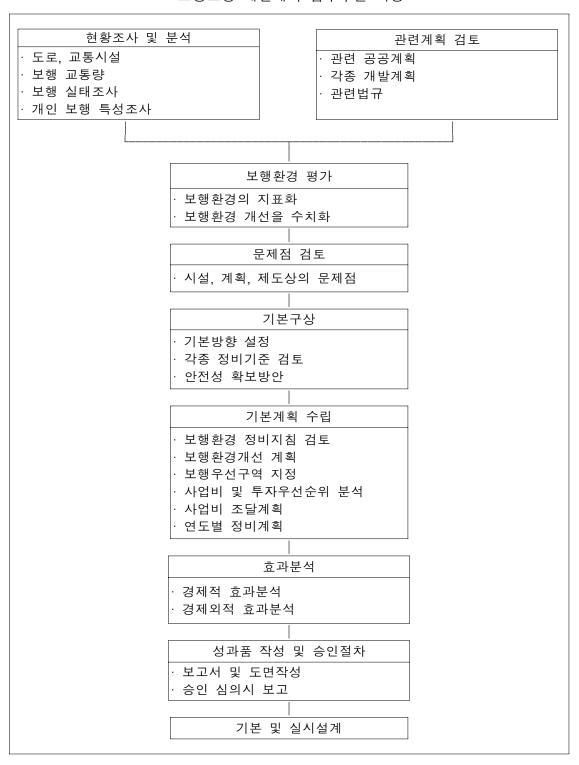
- 당해 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시·군(구)에서 보유하지 아니한 자료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수집하되 발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ㅇ 발주자는 다음의 자료를 제공한다.
 - 보행시설(이동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현황 및 기존계획
 -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도면 및 관련자료
 - 발주자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자전거도로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어린이보호구역, 택지 및 공단 개발계획, 관광지 개발계획, 기타 관련계획 및 관련자료

다. 업무범위 및 추진과정

- ㅇ 업무범위
 -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 보행교통 개선대책
 -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

ㅇ 업무 추진과정

<보행교통 개선계획 업무추진 과정>



2. 대가산정기준

가. 표준적산내역

종별	세 별	내 용	규 격	단위	비고
	1. 보행교통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 절차 검토	직접인건비	인	
	2. 보행교통 현황조사, 분석	·보행신호체계, 보도시설, 보행통행량(속도/밀도) 등 ·보행 안전시설 및 유형별사고, 가로등, 차량속도 등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보행시설물 유지 보수, 대중교통정보제공 등	직접인건비	인	
	3. 관련계획 검토	·관련 공공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각종 개발계획 검토	직접인건비	인	
직 접 비	4. 문제점 검토 및 장래전망	·현재 시설, 계획 및 제도상 문제점 검토 ·보행시설기준 대비 현황검토 및 보행환경 평가 ·보행환경 여건변화 및 전망	직접인건비	인	
-1	5. 정비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보행교통 수단분담 목표 ·보행교통개선지표(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접근성 등)수립	직접인건비	인	
	6. 정비방안 작성	·보행시설 및 환경 개선방안 ·보행우선구역 및 주요 시설 보행동선체계 구축방안 ·투자우선순위 및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직접인건비	인	
	7.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계획 수립 (정비사업 효과분석) ·재원조달방안	직접인건비	인	
	8. 성과품 작성	·보고서 작성 ·관련도서 작성			
	ㅇ 직접 경비			1식	직접경비산정 참조
 간 접	ㅇ 제경비		(직접인건비)× 110~120%	1식	
비	ㅇ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20~30%	1식	

나. 원단위 책정 및 산정기준

1) 원단위 산정기준

- 적산 기준규모는 인구 500,000명을 기준으로 하며, 계획도로연장(km)을 고려함
- 소요 기술인력의 산정은 기준규모 도시에서의 소요 기술인력에 대상도시의 인구와 인구규모에 대한 보정계수 및 계획도로연장에 의해 산정함
- 계획도로 연장이 100km이하인 경우는 다음의 적산식에 의해 산정하며, 10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정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2) 적산기본산식

① 기본식

- 기 술 사 : $Y_P = 57.02 \times P^{5/6} + L_P$

- 특급 기술자 : $Y_E = 67.08 \times P^{5/6} + L_E$

- 고급 기술자 : $Y_S = 80.50 \times P^{5/6} + L_S$

- 중급 기술자 : $Y_J = 111.80 \times P^{5/6} + L_J$

- 초급 기술자 : $Y_A = 134.16 \times P^{5/6} + L_A$

- 중급 기능사 : $Y_D = 120.75 \times P^{5/6} + L_D$

여기서, Y_P = 구하고자 하는 총 기술자 수(인·일)

 $P = \frac{\text{대상도시인구}}{\text{기준도시인구}} = \frac{\text{대상도시인구(명)}}{500,000}$

 L_P = 계획도로연장(X)에 의한 투입인력수(인·일)

② 계획도로 연장에 의한 투입인력 산정(Lp)

i) *X*≤100*km* (계획도로연장 100km이하시)

· 기 술 사 : $L_P = 6.314 + 0.2775X - 0.0006X^2$

• 특급 기술자 : $L_E = 7.428 + 0.3265X - 0.0007X^2$

· 고급 기술자 : $L_S = 14.857 + 0.6528X - 0.0014X^2$

· 중급 기술자 : $L_J = 22.286 + 0.9793X - 0.0020X^2$

· 초급 기술자 : $L_A = 29.713 + 1.3057X - 0.0027X^2$

• 중급 기능사 : $L_D = 34.667 + 1.5233X - 0.0032X^2$

③ 기술자 투입 비율

			J	기술자비	율(%)		
세 별	내 용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1. 보행교통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1.1	1.1	1.0	0.5	0.5	0.3
정책목표 및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절차 검토	1.6	1.6	1.4	1.1	1.3	0.7
기본 방향 	소 계	2.7	2.7	2.4	1.6	1.8	1.0
	보행신호체계, 보도시설, 보행통행량(속도/밀도) 등	0.9	0.9	0.8	1.4	3.1	4.9
 보행교통 현황조사, 	보행 안전시설 및 유형별사고, 가로등, 차량속도 등	0.9	0.9	0.8	1.4	3.1	4.9
분석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보행시설물 유지 보수, 대중교통정보제공 등	0.8	0.8	0.7	1.2	2.7	4.2
	소계	2.7	2.7	2.4	4.1	8.9	14.1
	관련 공공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3.7	3.7	4.5	8.1	9.4	7.1
3. 관련계획	· 각종 개발계획 검토	1.6	1.6	1.9	3.5	4.0	3.0
검토	소계	5.3	5.3	6.4	11.5	13.4	10.1
	현재 시설, 계획 및 제도상 문제점 검토	7.5	7.5	7.0	6.2	6.7	8.1
4. 문제점	│ ^{ㅁ ㅗ} │ 보행시설기준 대비 현황 검토 및	6.4	6.4	6.0	6.2	7.8	8.1
검토 및 장래전망	보행환경 평가 보행환경 여건변화 및 전망	7.5	7.5	7.0	8.2	7.8	4.0
	소 계	21.3	21.3	20.0	20.5	22.3	20.2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4.0	4.0	3.4	0.9	0.3	0.3
5. 정비방향	보행교통 수단분담 목표 설정	6.0	6.0	5.0	3.2	2.2	1.8
설정 및 기본구상	보행교통 개선지표(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접근성 등) 수립	10.0	10.0	8.4	5.0	3.8	3.1
	소 계	20.0	20.0	16.8	9.0	6.3	5.1
	보행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보행우선구역 및 주요 시설	12.3	12.3	12.8	13.1	10.0	12.0
6. 정비방안	보행동선체계 구축방안	10.7	10.7	11.2	13.1	10.0	12.0
작성	(보행환경개선 사례 유형) 투자우선순위 및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7.7	7.7	8.0	6.6	2.2	1.3
	소 계	30.7	30.7	32.0	32.8	22.3	25.3
 7. 투자계획	투자계획 수립(정비사업 효과분석)	5.6	5.6	7.2	6.2	5.7	2.4
및 재원조달	재원조달방안	3.7	3.7	4.8	2.1	1.4	0.6
방안	소 계	9.3	9.3	12.0	8.2	7.1	3.0
	보고서 작성	6.4	6.4	6.4	9.2	13.4	15.9
8. 성과품	관련도서 작성	1.6	1.6	1.6	3.1	4.5	5.3
작성	소 계	8.0	8.0	8.0	12.3	17.9	21.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기술자 투입 비율

	기술자비율(%)					
세 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1. 보행교통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	2.7	2.7	2.4	1.6	1.8	1.0
2. 보행교통 현황조사	2.7	2.7	2.4	4.1	8.9	14.1
3. 관련계획 검토	5.3	5.3	6.4	11.5	13.4	10.1
4. 문제점 검토 및 장래전망	21.3	21.3	20.0	20.5	22.3	20.2
5. 정비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20.0	20.0	16.8	9.0	6.3	5.1
6. 정비방안 작성	30.7	30.7	32.0	32.8	22.3	25.3
7.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9.3	9.3	12.0	8.2	7.1	3.0
8. 성과품 작성	8.0	8.0	8.0	12.3	17.9	21.2
· 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기술업무의 직접인력 직종에 대한 소요공수

계획대상지인구규모(인)	5만~ 20만	20만~ 50만	50만~ 60만	60만~ 85만	85만~ 150만	150만~ 400만	400만이상
계획도로연장기술자	5Km [~] 30Km	30Km~ 50Km	50Km~ 85Km	85Km~ 125Km	125Km~ 200Km	200Km [~] 300Km	300Km 이상
기술사	16	41	76	92	122	191	388
특급기술자	19	48	89	108	144	224	457
고급기술자	30	71	125	154	204	314	610
중급기술자	44	102	178	221	292	449	865
초급기술자	56	129	222	277	367	562	1068
중급기능자	60	134	223	281	371	565	1043

다. 직접경비 산정

1) 현장조사 소요인력 산정내역

항 목	조 사 내 용	조사결과 활용
1. 도로 현황조사	·도로구간별 : 횡단면 폭원, 경사로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도로점유시설의 종류, 위치, 크기	보도 설치 가능여부 분석
2. 교통시설 현황조사	·보도율, 보도폭원별 현황, 보도 포장재별 현황 ·보행관련 시설물(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철도역, 도시철도역, 버스, 택시정거장, 터미널 등의 위치	보행 횡단시설 및 주요 결절점 파악
3. 보행교통량조사	·주요지점의 시간대별 보행량	보행환경 조사
4. 보행특성조사	·보행특성 조사 ·보행환경 관련 쾌적성 조사 ·보행환경 만족도 조사	보행환경 실태 파악
5. 보행실태조사	・교통약자 보행환경 조사	교통약자 입장에서 보행환경 검토

2) 현장조사 표준소요인력 산정기준

조 사 항 목		소요인원 산출원단위	비고	
1 [고취하	도로기하구조조사	2~5인/교통지구	조사대상 교통지구는 당해	
1. 도로현황	주변토지이용조사	2~5인/교통지구	대상도시의 특성에 따라 가변	
2. 교통시설 현황		1~3인/교통지구	조사대상 교통지구는 당해 대상도시의 특성에 따라 가변	
3.보행교통량 조사	주요지점 시간대별 조사	2인/지점	조사 지점은 대상도시의 특성에 따라 가변	
4. 보행특성	보행특성조사	2~4인/교통지구	조사대상 교통지구는 당해 대상도시의 특성에 따라 가변	
조사	설문조사	2~4인/교통지구	조사대상 교통지구는 당해 대상도시의 특성에 따라 가변	
5. 보행실태조사		2~4인/교통지구	조사대상 교통지구는 당해 대상도시의 특성에 따라 가변	
6. 조사자료 정리 및 코딩		조사자료의 량에 따름	총 투입 조사인원의 30%	

3) 기타 직접경비 산정내역

- ① 출장비
- ㅇ 여비 및 통신비
- ㅇ 국내여비 및 통신비 : 실 소요경비 계상
- 해외출장비 : 실 소요경비 계상
- ② 회의비
- 회의비, 공청회비, 자문비등 회의횟수 및 인원에 따라 실 소요경비 계상
- ③ 인쇄비
- 성과품 목록에 따라 조달청 단가 적용

3. 표준성과품

구 분	표 준 성	ul ¬		
구 분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비고
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발주처와 협의결정	20 부 50 부	
기타 관련자료	보행교통조사 자료집 - 보행시설 및 보행환경 조사 자료 - 보행시설 이용통행량 조사 자료 인허가시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	발주처와 협의결정	30 부 1 식	

4. 신규품셈 작성 사례

○사례 개요 : OO지구 보행교통 개선계획

- 인구 : 500,000인 - 연장 : 100km

1) 직접인건비 산정

① 직접인건비

적용 산식

- 기 술 사 : $Y_P = 57.02 \times P^{5/6} + L_P$

- 특급 기술자 : $Y_E = 67.08 \times P^{5/6} + L_E$

- 고급 기술자 : $Y_S = 80.50 \times P^{5/6} + L_S$

- 중급 기술자 : $Y_J = 111.80 \times P^{5/6} + L_J$

- 초급 기술자 : $Y_A = 134.16 \times P^{5/6} + L_A$

- 중급 기능사 : $Y_D = 120.75 \times P^{5/6} + L_D$

여기서, $Y_p =$ 구하고자 하는 총 기술자 수(인·일)

$$P = \frac{\text{대상도시인구}}{\text{기준도시인구}} = \frac{\text{대상도시인구(명)}}{500,000}$$

 L_P = 계획도로연장(X)에 의한 투입인력수(인·일)

- X≤100km (계획도로연장 100km이하시)

· 기 술 사 : $L_P = 6.314 + 0.2775X - 0.0006X^2$

· 특급 기술자 : $L_E = 7.428 + 0.3265X - 0.0007X^2$

• 고급 기술자 : $L_S = 14.857 + 0.6528X - 0.0014X^2$

· 중급 기술자 : $L_J = 22.286 + 0.9793X - 0.0020X^2$

· 초급 기술자 : $L_A = 29.713 + 1.3057X - 0.0027X^2$

· 중급 기능사 : $L_D = 34.667 + 1.5233X - 0.0032X^2$

① 기술사 $Y_P = 57.02 \times P^{5/6} + L_P$ $= 57.02 \times (500,000/500,000)^{5/6} + (6.314 + 0.2775 \times 100 + 0.0006 \times 100^2)$ = 85.1

② 특급기술자
$$Y_E=67.08\times P^{5/6}+L_P$$

$$=67.08\times (500,000/500,000)^{5/6}+(7.428+0.3265\times 100+0.0007\times 100^2)$$

$$=100.2$$

② 소요인력 산정결과

구 분	인구(인)	연장(km)	총소요인력
기술사	500,000	100	85.1
특급 기술자	500,000	100	100.2
고급 기술자	500,000	100	146.6
중급 기술자	500,000	100	212.0
 초급 기술자	500,000	100	267.4
중급숙련기술자	500,000	100	275.7
계	_	-	1087.1

③ 직접인건비 산정

구 분	소요인원(인/일)	단가(원)	직접인건비(원)
기술사	85.1	330,109	28,086,994
특급 기술자	100.2	258,612	25,902,061
고급 기술자	146.6	205,855	30,185,960
중급 기술자	212.0	181,472	38,474,968
초급 기술자	267.4	133,629	35,738,141
중급숙련기술자	275.7	136,981	37,772,100
계	1087.1	_	196,160,224

자료: 단가는 2012년 상반기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2) 직접경비 산정

① 현장조사비 산정

	구 분	개소수	조사인원	소요인원	단가(원)	금액(원)
1. 도로	도로기하구조조사	5	2	10	75,608	756,080
현황	주변토지이용조사	5	2	10	75,608	756,080
2. 교통	시설 현황	5	2	10	75,608	756,080
3. 보행	교통량	10	2	20	75,608	1,512,160
4. 보행	특성조사	5	2	10	75,608	756,080
5. 설문	조사	5	4	20	75,608	1,512,160
6. 보행	실태조사	5	2	10	75,608	756,080
7. 자료	정리 및 코딩	_	투입인원의 30%	27	57,859	1,562,193
	계	-	_	117	_	8,366,913

자료: 현장조사원 노임단가는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75,608원 적용 정리원 노임단가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57,859원 적용

② 출장비

구 분	회 수	1회비용	금액(원)
회의비	25	200,000	5,000,000
출장비	10	300,000	3,000,000
계	_	_	8,000,000

③ 인쇄비

구 분	부 수	페이지	단가(원)	금액(원)
중간보고서	20	300	13,410	4,023,000
최종보고서	50	300	13,410	4,023,000
조사자료집	30	150	13,410	2,011,500
계	-	_	_	10,057,500

④ 직접경비((1)+(2)+(3))

구 분	현장조사비	출장비	인쇄비	계
직접경비	11,364,959	8,000,000	10,057,500	26,424,413

3) 제경비(직접인건비 × 110~120% 기준)

직접인건비 × 110%

=215,775,246

4)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82,387,294

5) 총계

항 목	금 액(원)
직 접 인 건 비	196,160,224
직 접 경 비	26,424,413
제 경 비	215,776,246
 기 술 료	82,387,294
부 가 가 치 세	52,074,818
·	572,822,995

[부록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제11801호, 2013.5.22.,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	제1조(목적) 이 영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제2조(자동차의 종류)「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과 같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1. "교통수단"이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것을 말한다.	
2. "교통물류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과「물류정책기본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	
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3. "교통물류체계"란 교통 및 물류와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된 교통수단,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물류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4. "교통물류운영자"란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 물류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항공법」, 「해운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교통물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나.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교통물류시설의 경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교통물류시설을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 5.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교통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 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사람·화물 등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 교통 물류의 발전을 이루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 7. "대중교통"이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
- 8.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 설기계

9. "국가교통축"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기능(幹線交 通機能)을 담당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하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 단 중 교통물류시설의 개발·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 하는 공사 또는 공단

11. "전환교통"이란 기존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 으로 전환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 하다.

12. "교통물류가격"이란 교통수단 이용자가 사람이 나 화물 운송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불하는 운임 및 요금과 교통물류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의 대가로 해당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지불하는 통행료 및 사용료 등을 말한다.

1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 메탄(CH4) · 아산화질소 (N2O) · 수소불화탄소(HFCs) · 과불화탄소(PFCs) · 육 불화황(SF6)을 말한다. 14.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이란 보행(步行), 자 전거 등을 말한다. 15.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습 판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 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 (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유 불화황(SF6)을 말한다. 14.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이란 보행(步行), 자 전거 등을 말한다. 15.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습 판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 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 체계의 추진 2. 환경진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 메탄(CH4) · 이산화질소 (N2O) · 수소불화탄소(HFCs) · 과불화탄소(PFCs) · 육 불화황(SF6)을 말한다. 14. "비동력 · 무탄소 교통수단"이란 보행(步行), 자 전거 등을 말한다. 15.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 · 습 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 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 체계의 추진 2. 환경진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N2O) · 수소불화탄소(HFCs) · 과불화탄소(PFCs) · 육 불화황(SF6)을 말한다. 14. "비동력 · 무탄소 교통수단"이란 보행(步行), 자 전거 등을 말한다. 15.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 · 습 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 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 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불화황(SF6)을 말한다. 14.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이란 보행(步行), 자전거 등을 말한다. 15.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습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滅縮)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14.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이란 보행(步行), 자전거 등을 말한다. 15.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습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전거 등을 말한다. 15.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습 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 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 체계의 추진 2. 환경진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15. "경제운전"이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습 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 출 등을 감축(滅縮)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 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관 또는 행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 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출 등을 감축(減縮)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 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 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 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4.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5.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
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교통물류운영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	서식의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고 협력하여야 한다.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
	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1. 녹색 교통물류 운영사업 개요
	2. 종업원수 등 교통물류운영자 현황
	3. 재무제표
	4. 녹색교통물류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녹색교통물류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
	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는 것으
	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를 우수교통물류운
	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 물류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녹색교통물류 운영자 인증서(이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 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교통물류운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⑦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
	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m)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
	영자 선정기준 및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
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	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
하게 교통물류체계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 교통물류활동으로	할 수 있다.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1.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대체·개선에 대한 보조
한다.	금 지원

③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중요성을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 시설의 확충·개선에 대한
인식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		보조금 지원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시책에		3.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정
협력하여야 한다.		보화, 인력양성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4. 교통물류가격의 감면 또는 보조금 지원
		5.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대한 재정 지원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될 사항)	
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한다.	2.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1.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3. 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등의 현황 및 전망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2.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5. 지속가능 교통물류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3.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	민·관 협력방안	
발,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전을 위한 대책	7.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	
4.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財源)의 조달	축방안	
방안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국제협력방안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	9. 지속가능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 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 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 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 2.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제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1.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 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

- 만 해당한다)
- 3.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

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교 제6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 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 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다.

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 후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기본계획 시행 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 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 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 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계 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접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만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장・광역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과 조화를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행정 이루며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 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제1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항에 따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 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지방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지방의회 및 관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계획의 주요.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시(「제주특별자치도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 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 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계획|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

-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지방계획을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 면「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른 지야 한다. |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② 제1항에 따라 공고·열람된 지방계획의 내용에 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2>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계획 있다. |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열람 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 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 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 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방 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검토하여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 야 하며, 지방계획에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 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특별자치도 이 있거나 지방계획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 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다.<개정 2013.3.23> 는 국가교통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방의회 및 관계 전문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방 가의 의견청취 결과 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 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

제8조(지방계획의 제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시는 제4항에 따라 지 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지방계획에 다음 각 호의

-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변 경 요청을 반영하여 지방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 제9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① 특별시 | 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계획을 시 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 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 제1항에 따른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 다. 행계획(이하 "지방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 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계획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모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연| 도의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수립 또는 변 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 게 그 수립 또는 변경된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하는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에서 정한 교		
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		
루어야 한다.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제10조(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① 법 제12조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제
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	지역"이란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의 교통물류권역(이하 "교통물류권역"이라 한다)으로	교통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별법」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다)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1. 기간교통물류권역: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2. 「도로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	이하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	3. 「도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도대체우회	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도로	다.
2. 도시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란 다음 각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공고하는 경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제1호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기간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외한 <개정 2013.3.23> 다)

- 3. 지역교통물류권역: 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과|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3. 자동차 운행 제한의 구간·구역 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특별히| 5.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우회도로 및 대체교통 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수단 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2.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경우를 말한다)
- 이를 승인한 지역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동차 운행 제한의 사유

- 4. 자동차 운행 제한의 기간
-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시작 지점 과 끝 지점 등에 자동차 운행 제한 알림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교통물 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권역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교통물류권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 며,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 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알림판을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① 국	
	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지속가능성 조사ㆍ평	
	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		
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에 있		
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지역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		

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① 국토교통	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
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사항)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3.23>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	2.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교통물류의 온실	3. 혼잡도로의 비율
가스 배출량 현황, 교통혼잡 정도, 에너지 소비, 자	4. 인구 1인당 교통비용
동차 통행량, 교통시설 용량, 수송 분담구조 및 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	
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행	

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 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 제11조(지속가능성 조사·평가방법 등) ① 법 제15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41조제 |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분에 따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사|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 ·평가(이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라 한다)를 실 <개정 2013.3.23> 능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 1. 정기조사ㆍ평가: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실시
- ②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못한 경우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 호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 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제공하기 위 2. 수시조사ㆍ평가: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이라 한다)을 정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기조사·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 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 · 평가한 결 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 특정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
	사항	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
	③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현지조사, 인공위성 등	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
	을 통한 원격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 및 문헌조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평가에 착수	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
	하기 전에 조사대상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	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정 2013.3.23>	요청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평가를 위하	② 특별대책지역은 지정요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	1.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1호나
	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	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3호나
	2013.3.23>	제4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	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는 군수가 지속가능성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제13조(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치) 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의하여 교통물류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 때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특성 하는 계수(係數)(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과 기능 등 국내 여건과 각 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 개발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 <개정 2013.3.23> 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효율적의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추진상황을 점검 하여 공동으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 2013.3.23>
-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등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축 등 목표를
- 제14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① 국토교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 (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절 |차·방법이「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기준에 들어맞는지 와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

	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	
	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	
	스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	
	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할 때에는 산	
	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통	
	계를 작성・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		제3조(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제3
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		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산정의
용을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3.3.23>		1. 내부비용: 교통시설 공급비용, 교통시설 운용비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교통물류정책을 수립・		용, 교통시설 이용비용, 이용자 통행시간 비용, 국가
시행하고 평가할 때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물류비용, 기타 비용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2. 외부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교통환경
마련하여야 한다.		비용, 기타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비용 산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정기적으

정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의 변화추세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할 때에는
		현지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와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산정된 사회경제적 비용
		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감축계획협약의 체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개정 2013.3.23>	
	② 감축계획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감축계획	
	2.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감축계획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감축계획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감축계획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계획 추 진에 필요한 사항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 제15조(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① 국토교통 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 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 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1항에 따른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교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제1항에 따른 한다. <개정 2013.3.23>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 1. 기준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기준총량" 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라 한다): 현재 또는 과거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특별시장 산정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 2. 목표연도의 예상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예측 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총량"이라 한다):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예측한 목표 <개정 2013.3.23> |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3. 목표연도의 감축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감축 목표총량"이라 한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감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목표연도에 제2호 의 예측총량보다 더 줄이는 것으로 계획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 1.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측정의 용이성 및 객관성
- 2. 감축계획 시행의 실현 가능성
-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 1.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교 통물류권역의 폐쇄선과 경계선을 고려할 것
- 2.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통행 수요가 발생하는 간선도로의 통행량을 고려할 것
- 3. 연평균 1일 통행량으로 설정할 것. 다만, 통행량의 급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 4.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고려할 것
- 가. 최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추세
- 나. 장래의 사회경제 발전 관련 지표
- 다. 중ㆍ장기 교통 관련 계획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7조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마. 국가공인 통계자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설정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감축계획협약의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이하 "감축계획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이내의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자동차 통행량 현황 및 여건 전망
- 2. 기준총량 및 예측총량의 산정 방법 및 내용
- 3. 단계별 감축목표총량 및 추진전략
- 4. 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등 추진방안
- 5. 감축계획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 추진체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목표총량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감축계획에 대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감축계획을 전 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감축 계획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 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① 감축 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축계 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 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 2. 자동차 통행량 감축실적 및 감축목표총량 달성 여부 3. 감축목표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추진실적 4.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 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축계획협약을 체결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교통물류권역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감축계획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적 ㆍ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관리) 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

여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광 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 조의 설정을 위한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轉換交通) 추진, 경제적 유인 부여 등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① 국가 및 지방 제19조(대형중량화물의 기준) 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에 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 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대책을 마련하여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야 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 2.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3.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4.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013.3.23>
- 1. 대체교통수단을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
- 조치
- 3.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 약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 5.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대체·우회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제20조(대형중랑화물의 운송대책) 법 제20조제2항제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에너지를 절

- 1. 경제적인 화물 자동차의 운행
- 2. 에너지 절약적인 경제운전

제20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운전 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하게 된 때 제21조(전환교통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① 국토교통부 전환교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승・환적(換積) 시설 장관・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장비의 설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는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환교통에 관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광 한 협약(이하 "전환교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면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 이용자 및 화주(貨主)| 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에게 효율적인 교통수단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라 한다)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 지원사 <개정 2013.3.23>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광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력을 가진 자를 공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 2013.3.23> 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광 수 있다.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협약의 체결, 보조금 등 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개정 2013.3.23> 통령령으로 정한다.

약 대상자를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 1. 전환교통 지원 목적
- 2. 여객, 화물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 분야
- 3.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선정 기준
- 4. 전환교통협약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 획서 등 구비서류
- 5.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에 대한 지원
- 6.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선정 일정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부터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받| 는 지역에 대하여 전화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환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국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1. 교통물류 현황 및 여건 전망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 전환교통의 목표 및 추진전략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 3. 교통물류가격 조정,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등 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2조제1 한다. <개정 2013.3.23>

- 제적 규제 또는 혜택 부여방안

<개정 2013.3.23>	4. 교통수단 운행 제한, 대체교통로 지정 등 교통통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 자전거, 보행 등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화방안	
<개정 2013.3.23>	7. 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등 교통물류체계 효율화	
1. 교통수단의 추가, 운행횟수 증가 및 노선 조정	방안	
2. 대체교통로의 지정 및 대체교통로를 통한 운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촉	
3. 그 밖에 전환교통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	진에 필요한 사항	
로 정하는 조치		
	제22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 ① 전환교통협	
	약 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모한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	
	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전환교통협	
	약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다.	
	<개정 2013.3.23>	
	1.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2.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3.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4.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5.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7. 추진체계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 성에 필요한 사항
- ②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출된 전환교통 사업 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 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 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환교통협약 대 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 하여는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하다.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1. 대중교통 환승 할인 및 환승체계 구축 한다.

- 1.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목표 설정
-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4. 환경친화적 저상(低床)버스 도입 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6.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① 국가 및 제26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법 제

- 2.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 3.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 5. 철도 등 대중교통의 고속화 및 급행화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외에 대중교통의

4. 그 밖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		
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전환교통협약 체결)	
	①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	
	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선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교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환교통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전환교통 사업계획	
	2.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환교통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환교통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전환교통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사	
	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지원) ① 국토교		제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① 법 제24조
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2항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류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에 이바지한 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		한다.
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1. 녹색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할 것
마련할 수 있다.		2. 해당 녹색교통물류체계, 서비스 등이 다른 유사
<개정 2013.3.23>		한 교통물류운영자와 차별화되고 우수할 것
②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우수교		3. 해당 녹색교통물류체계, 서비스 수준 등을 유지
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하기 위한 인력, 장비 또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것
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① 제23	
	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한 전환교통협	
	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시행자"라 한다)는 전	
	환교통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환	
	교통협약 이행결과를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협약 기간이 끝난 후	
	에는 전환교통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전환교통협약의 개요	

2. 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전환교통 목표 량 달성 여부 3. 전환교통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교통협약 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전 환교통협약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 정적 · 기술적 지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환승·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2. 전환교통 기술의 개발 지원 3. 교통물류가격의 감면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 외에 전환교통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인력 확보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화교통협약 주무 관청이 정한다.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① 국토교통 제27조(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하거나 산부장관으로부터 교통물류가격 조정을 요청받은 특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수 있으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 사항이 포함된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을 수립 수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1. 교통수단별 또는 교통물류시설별 교통물류가격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현황 및 문제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 2. 교통물류가격의 조정목표 및 추진방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광용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교통물류가격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조정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한 사항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물류권역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관리하는 교통물 류운영자(해당 교통물류권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물류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물류 가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 교통수단별 또는 교통물류시설별 운임요금, 통행 료, 시설사용료 등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기준 및 내

<개정 2013.3.23>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① 국가 및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① 법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을 신설ㆍ확장 또는 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비하는 사업(이하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 지침의 적용 대상 교통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

을 집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	다.	
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의	2. 철도	
타당성을 평가할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편	3. 공항	
익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항만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	1. 교통물류시설의 계획, 입지선정 등 착수단계에서	
발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의 대기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보호에	
2013.3.23>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2. 교통물류시설의 건설단계에서의 대기환경, 토지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려면 미	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교통물류시설 개발	
<개정 2013.3.23>	시 환경훼손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⑤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		
려면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		
침에 따라야 한다.		
제27조(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기		
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국	제29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법	
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	

・시장 또는 군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 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물류 여건을 조성하기 위| 1.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에 대한 통행 우선권 부여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교통물류 정보화 사업 지원 |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3. 교통수단의 대체 지원(「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경비 지원,「대기환경」 2013.3.23>

- 1. 화경치화적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물류가격의 감|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 면 등의 지원
- 2.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구매자에 대한 교통물류 다) 관련 사업 인가·허가 등에서의 우대
-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9조(도시·군계획 등과의 연계) ① 국토교통부장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지침)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 <개정 2012.4.10> 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 교통수단 간 연계 계획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 도시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 2011.4.14, 2013.3.23>

1. 도시 내 접근통행거리 단축을 위한 주거·업무 4.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는 도시 · 공공·상업시설의 복합개발 촉진 및 생활권 내 배 · 군계획

- 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및「환경찬 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지원은 제외한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외에 주차장 확보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을 확대하기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환 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조치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 3. 도시 오염원 저감 등 환경개선

5.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 등 토지이용 계획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동 력(非動力)・무탄소(無炭素)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이용 3. 교통에너지의 소비저감 등을 위한 무질서한 도 시확산의 방지 4.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공 간구조로의 개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대상 지역의 선정 기준 및 지원 4. 승용차 이용억제 등 교통수요 관리 5.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여건 조성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시설 의 배치 및 개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 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도시・ 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도시 · 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제목개정 2011.4.14]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등)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는 대학원이 있을 것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개정 2013.3.23>

제한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다. 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다. <개정 2013.3.23> 「고시하는 일정한 수의 전담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개정 2013.3.23>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제 |군수는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이하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정책 등 국토교통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공고하는 경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 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을 것 |차 운행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 2.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고등교육법」제29조| 3. 자동차 운행 제한의 구간・구역

|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4. 자동차 운행 제한의 기간 |대학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5. 자동차 운행 제하에 따른 우회도로 및 대체교통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수단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군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시작 지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워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과 끝 지점 등에 자동차 운행 제한 알림판을 설치하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군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교통물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원 또는|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권역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교통물류권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 다.

<개정 2013.3.23>

- 위한 교육 연수

- 1. 자동차 운행 제한의 사유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 며,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알림판을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및 활성화를 ⑤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급	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국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3.3.23>
	4.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	
	• 개발	제16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5.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기술의 연구·개발	신청)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발전에 필요하다	3호서식에 따른다.
	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4장 비동력 · 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1조(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제31조(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수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1.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대책	
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2.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관련 생활문화 정착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	위한 제도적 방안	
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2조(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개정 2013.3.23>	경미한 변경) 법 제3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동력·무탄소 교통수	

- 4. 비동력·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 경하는 경우

- 5. 종합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 6. 그 밖에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우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소관 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 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 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2. 비동력·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단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추 3.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

>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

> > -175-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	제33조(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	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종합계획 시행	
립하여야 한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	
<개정 2013.3.23>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개정 2013.3.23>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종합계획 시행계획	
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	
	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종합	
	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시행	
	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 · 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	
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무탄	
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	제8조(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으로 정하는 철도역·버스터미널·공항 등의 개발사	하는 철도역·버스터미널·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란
업이나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업을 추진할 때에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이	<개정 2012.4.13, 2013.3.23>
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시설, 환승시	1.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설 및 환적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항공법 시행령」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
<개정 2013.3.23>	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공항이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	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	3. 삭제 <2013.3.23>
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4.「철도건설법」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인가·승인 등을 할 때에는	5. 「도시철도법」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무시설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
인하여야 한다.	객자동차터미널
<개정 2013.3.23>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의 설치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따른 산업단지

9.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0.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 11. 「도시개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사업 1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 성사업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1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제4호, 「한국철도공 사법 제13조 및 「도시철도법」제4조의5에 따른 역 세권 개발사업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 업도시개발사업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 발사업 2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제13호에 따

		른 환승센터 및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
		(도시・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
		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를 조성
		하기 위한 사업
제35조(비동력・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및	제34조(비동력·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비동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력·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홍보활동 등 비동력·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비동력·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2. 비동력·무탄소 교통문화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동력	
	·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		
축하기 위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		
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	
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통 시책을 추진할 때	
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제9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	수립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행
다. <개정 2013.3.23>	교통 개선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지역별 보행교	<개정 2013.3.23>
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항목에는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공표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
· 보급하여야 한다.	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개정 2013.3.23>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
<개정 2013.3.23>	제공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선에 필요한 사항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개정 2013.3.23>		군수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
		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
		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	제35조(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	하여야 한다.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개정 2013.3.23>	들어야 하며, 인접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한다.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취 및 협의 후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	
4. 보행교통 개선대책	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인접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	
	수와의 협의 결과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개	
	선계획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등을 검토	
	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선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① 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의 보행교통 개선을 위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
한 건의・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	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 등을 보행교통		자 중에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1. 보행교통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및 활동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해당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한다.		2. 보행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직무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2. 보행교통에 관한 지도
	3. 보행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
	의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보행자의 날) 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	제11조(보행자의 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
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	행자의 날(이하 "보행자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1
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월 11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 행사의 내용・시기 등	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날 행사를 할 때에
	보행교통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정부표창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관할 일정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언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교통관리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보행환경 현황의 전시, 보행환경 개선 우수시
		책에 대한 시상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 우수공무원의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제36조(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41조제2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41조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	항 후단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항에서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을 말한다.	<개정 2013.3.23>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
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	서 변경	호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특별대책지역의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이라 한다)을 정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 및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	기조사・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
<개정 2013.3.23>	경	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관		못한 경우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 국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평가한 결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	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지	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을 변경(대통	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	3. 특정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
<개정 2013.3.23>	이지와 해당 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	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	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주 이상 일	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
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교통부장관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4.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교| 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 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 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 2013.3.23> 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개정 2013.3.23> ◎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안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국토교통|요청한 경우 |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역의 위치, 면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② 특별대책지역은 지정요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2013.3.23>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 · 관리한다.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 1.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1호나 <개정 2013.3.23> 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 제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 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다. <개정 2013.3.23>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3호나 제4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 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변경 시 고시사항)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 을 지정할 때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42조제3 제14조(특별종합대책의 내용)

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종합대책"이라 한다)을|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사항을 말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야 하다.

<개정 2013.3.23>

- 1. 특별종합대책의 기본방향
-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제39조(특별종합대책의 고시)
- 방안
-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 <개정 2013.3.23>
-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 9.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 10. 그 밖에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

-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개정 2013.3.23>
-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특별종합대책에 리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특별종합 항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 대책을 고시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 사유(특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 종합대책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종합대책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 야 하다.

- 1. 법 제43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
- 2. 비동력 · 무타소 교통수단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 3. 교통수단 간 연계 · 환승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

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국가교 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종합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종합대책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특별종합대 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 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 국토		제15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방법 및 절차)
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3조제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1항 각 호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 2013.3.23>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		
료의 부과・징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징수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7조에 따른 교		
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3.3.23>		
제44조(특별종합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	제40조(특별종합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종합대책의 시행결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해	
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당 연도의 특별종합대책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개정 2013.3.23>	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른 특별대책지	
	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종합대책 기간의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개요	
	2. 특별종합대책의 내용	
	3. 특별종합대책의 추진실적	
	4.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 효과	
	5.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및 효과	
	6. 향후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관리방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종합대책	
	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	7	
관은 특별대책지역이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으		
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		
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5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	

관 등)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조사 · 연구
- 2.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교육・홍보
-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는 사업
- 4.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 5.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 6.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 5. 임원에 관한 사항
-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6장 보칙		
제46조(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	제41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제16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등)	신청)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면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3호서식에 따른다.
교통물류운영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있다.	<개정 2013.3.23>	
<개정 2013.3.23>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는 대학원이 있을 것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고시하는 일정한 수의 전담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정책 등 국토교통부장관	
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저탄소 녹색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	
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을 것	
<개정 2013.3.23>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	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고등교육법」제29조	
라 지정된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운	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대학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교육훈련의 내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령령으로 정한다.

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
- 2.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 보급
-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국 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 4.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 • 개발
- 5.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기술의 연구·개발

		-1 1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발전에	필요하다
	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		
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		
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		
과의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정책 등 지속가능 교통물		
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		
사 • 연구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4.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등 국제규제에 관		
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제42조(경제운전 교육 협조)	제17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① 국토고

- 여야 하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의 교육 및 홍보를 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 <개정 2013.3.23> 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운전과 관련된 교과 교육을 통한 경제운전 교육|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관한 사항
- 3. 경제운전 관련 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련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갖출 것 |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경| 2.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 2.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 연료소비와 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경제운전 통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 및 홍 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경제운전에 대한 교|교육프로그램의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제운전운영 |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관리시스템 구축, 관련기기 및 장비의 개발·보급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등 관련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경|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등을| 경제운전운영관리시스템, 관련기기 및 장비 등에 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2. 경제운전 관련 학교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경제운전 관|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① 법 제48 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 |을 확보할 것
- 3.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 을 갖출 것
- 4. 지정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경제

- 부출연연구기관
-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 교육센터는 다음 <개정 2013.3.23>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 2. 경제운전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3. 경제운전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운전|록표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개정 2013.3.23>
-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관하 법률 |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 외에 국토교통부장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관이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교통 관련 비영리|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다.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1. 경제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 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4. 경제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운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경제운전문화 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를 확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책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

- 1. 경제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황
- 2.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는 증명

		3.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등 활용계획
		4. 경제운전 교육센터 운영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
		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
		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
		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① 교통물류	제44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법 제	
운영자, 교통물류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	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저탄	호의 자를 말한다.	
소 녹색교통물류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	
육·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	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	
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한다)의 회원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저탄소 교통물류 진흥 등에 관심이 있는 자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교통물류운영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①	제46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법 제50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사업	
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2. 우수 교통물류운영자 선정・지원 사업	
융자할 수 있다.	3. 전환교통협약 사업	
1. 특별종합대책의 시행	4.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의 개발 사업	
2. 제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	5.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보급 사업	
량 총량 관리	6.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	
3.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	화 사업	
사업	7. 경제운전 활성화 사업	
4.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환	8. 저탄소 녹색교통물류분야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사업	
5.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② 국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등에 참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여하는 교통물류운영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개		
발자 및 구매자 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는 제외한다) 라 공공 투자·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 2013.3.23>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 운영
 -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 공단에 위탁하다.

<개정 2013.3.23>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업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업무
-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 발 및 관련 자료의 작성 업무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 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속가능 교통 물류체계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공공투자・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

	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관리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실태조사	
	4.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 작성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2조(과태료)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회	로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를 부과한다.	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기	·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	
	다.	
	<개정 2013.3.23>	